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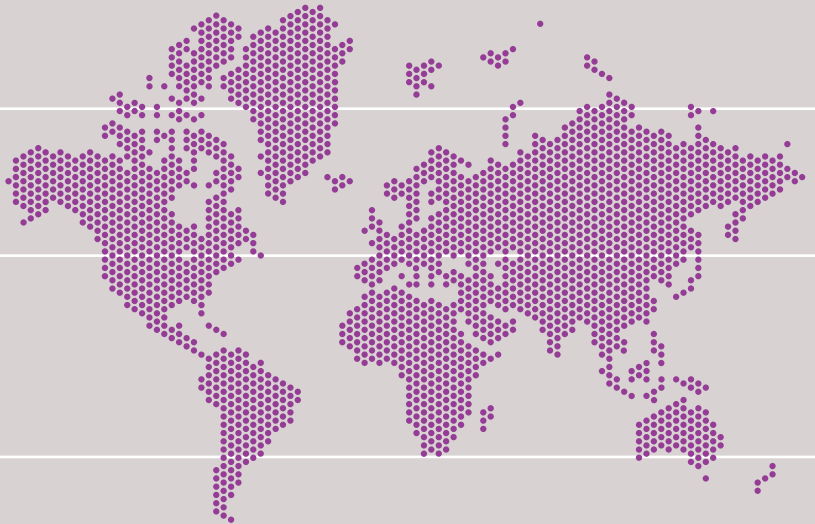
K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I

김지연 · 최필수 · 임민경 · 나승권

E



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팀, 북미·대양주팀, 유럽팀, 일본팀), 협력정책실(다자통상팀, 지역통상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개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신흥지역연구센터(중국팀, 중국권역별·성별 연구단, 동남아팀, 인도·남아시아팀, 러시아·CIS팀, 중남미팀, 아프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연구자료][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 보고서, 학술지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JEA,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현안자료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원문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장 이 일 형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TEL : (02) 3460-1122, 1199 / FAX : (02) 3460-1144

URL : <http://www.kiep.go.kr>

연구자료 13-11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김지연 · 최필수 · 임민경 · 나승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3-11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인 쇄 2013년 12월 26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쇄처 네오미아기획 02) 2274-5097

© 20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355-1 94320

978-89-322-2064-2(세트)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김지연 · 최필수 · 임민경 · 나승권

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에 북·중 관광협력을 전개해왔다. 반면 북한은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주요 관광협력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중 관광협력은 양국간 관광객의 상호 왕래보다는 중국 관광객의 북한 여행이 거의 대부분인 편중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북한 관광객 수는 4,500명인 반면, 북한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 수는 베이징, 옌지·훈춘·투먼, 선양·단둥 출발지만 기준으로 할 때 약 5만~6만 명이였다.

북중 관광협력 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관광객의 대북 관광은 매년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된다. 이처럼 대북 관광이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북한의 열악한

관광인프라 시설에 기인한다. 둘째,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통행증을 갖고 여행하는 변경관광과 비자를 받고 여행하는 일반관광으로 구분된다. 변경관광의 주요 방문지역은 나진·선봉, 남양, 온성, 신의주, 칠보산 등 북·중 접경지역이 중심이며, 일반관광은 평양과 묘향산, 금강산, 개성 등 북한 내륙지역이 중심이 된다. 변경관광은 도보, 차량, 기차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700~2,500위안이다. 일반관광은 비행기, 기차, 차량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나 그 범위는 약 1,700~6,500위안이다. 셋째, 중국에서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는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과 단둥, 베이징 등이다. 이들은 국경을 마주하는 접경지역이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직항노선이 있는 지역이다. 단 중국 관광객을 출국시키고 북한에서 이들을 인솔할 수 있는 여행사는 중국 여유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북한이 지정한 여행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제여행사들로 한정된다. 국제여행사로 허가받은 여행사는 중국에 모두 1,864개가 존재하며, 이들 중 중국인들을 출국시키고 북한 내에서 관광일정도 진행할 수 있는 여행사는 북한당국이 지정한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행사로 한정된다. 양국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행사는 옌지, 훈춘, 투먼에 12~15곳이 존재하며, 선양, 단둥에는 6~10곳, 베이징에는 8~10곳이 존재한다. 넷째, 2012년 주요 도시를 거쳐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만~6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2년 옌지를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은 약 1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훈춘과 투먼을 통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같은해 선양과 단둥을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만 4,000명에서 3만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며,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인 여행객을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약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할 시 그 규모는 약 2,169만~3,462만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2012년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8,600만 달러이다. 같은해 북한이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를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과 비교할 때 이는 개성공단으로부터의 수입의 약 25.2~40.3% 수준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북·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중국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은 금강산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7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보다 약 1.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성 관광사업과 북·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연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 추정치는 개성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8년의 외화 수입과 비교할 때 약 1.4~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對)북한 관광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요인들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들의 대(對)북한 관광은 대부분 노년층의 전쟁이나 계획경제 시절을 회고하기 위한 추억여행이거나 젊은 층의 경우 북한이라는 폐쇄사회에 대한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여행이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여행단을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북한의 여행 인프라 및 제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통행 간소화 등의 노력은 있었으나 관광지 자체를 새로 개발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정치외교적으로 대외정책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소폭의 개선이 근본적인 수요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 측 여행사들은 낮은 마진율로 인해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대(對)북한 여행증가에 긍정적인 요

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내에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중국의 對북 여행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관광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거의 처음으로 수행된 종합적 조사사례로서 전반적인 여건 및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향후 북한 내 관광산업 기반여건 및 관광수요 등 특정주제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남북 관광협력계획 등의 수립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 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13
제2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제도적 여건	17
1.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17
가. 중국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17
나. 북한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22
2. 북·중 관광협력과 연계된 주요 법률 및 행정기구	25
가. 정책 마련에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	25
나. 주요 행정기구	32
제3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 현황 분석	36
1. 관광 시기와 종류	36
2. 중국 내 북한 여행상품 취급 도시 및 여행사 현황	40
3. 주요 여행상품 정보: 일정, 지역, 이동수단, 비용 등을 중심으로 ...	45
4. 대북 여행에 참가한 중국 관광객 수 및 특성	55
5. 소결: 북중 관광협력의 주요 특징	60
제4장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외화 수입 현황	64
1.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추정	64
2. 남·북 경협사업과 북·중 관광협력 간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	72
가. 개성공단사업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	73
나. 금강산 개성 관광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	76

제5장 주요 특징과 전망	82
참고문헌	85
부 록	88
Executive Summary	103

표 차례

표 2-1. 동북3성의 발전계획과 주요 내용	20
표 2-2. 조선국제여행사 내 지역별 담당부서	35
표 3-1. 2012년 중국을 방문한 북한 방문객 정보	37
표 3-2. 변경관광의 주요 상품내용: 출발·도착지, 이동수단, 비용을 중심으로	38
표 3-3. 일반관광의 주요 상품내용: 출발·도착지, 이동수단, 비용을 중심으로	39
표 3-4. 중국 내 비준 받은 국제여행사의 지역별 분포도	42
표 3-5. 주요 도시에 소재한 주요 대북 여행상품 판매 여행사	43
표 3-6. 연지에서 출발하는 주요 북한 여행상품(2013년 1월 기준)	46
표 3-7. 훈춘과 투먼에서 출발하는 주요 북한 여행상품(2013년 1월 기준)	49
표 3-8. 선양과 단둥에서 출발하는 주요 북한 여행상품 (2013년 3월 기준)	51
표 3-9.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주요 북한 여행상품(2013년 1월 기준)	53
표 3-10. 2012년 연지에서 비행기로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 추정	56
표 3-11. 2012년 연지에서 차량으로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 추정	57
표 3-12. 2012년 훈춘에서 차량으로 북한 여행을 다녀온 중국 관광객 수 추정	58
표 3-13. 2012년 투먼에서 기차로 북한 여행을 다녀온 중국 관광객 수 추정	58
표 3-14. 2012년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 추정	59
표 4-1. 연지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추정	67
표 4-2. 훈춘, 투먼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을 통한 북한 외화 수입 규모 추정	68
표 4-3. 선양, 단둥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을 통한 북한 외화 수입규모 추정	70
표 4-4.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을 통한 북한 외화 수입규모 추정	71
표 4-5. 2012년 중국 관광객을 통한 북한 외화 수입규모 추정: 주요 도시 출발 기준	72

표 4-6. 개성공단 가동기업 수와 생산액, 북한 근로자 현황	73
표 4-7.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와 내용	75
표 4-8. 북한이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 추정치와 개성공단으로부터 벌어들인 외화 수입규모 비교	76
표 4-9. 금강산 관광일정, 여행요금 및 금지품목	78
표 4-10. 금강산 관광객 수 및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에 지급한 비용 ...	79
표 4-11. 금강산 관광과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비교	79
표 4-12. 개성 관광 일정, 여행요금 및 금지품목	80
표 4-13. 개성 관광객 수 및 개성 관광을 통해 북한에 지급한 비용	80
표 4-14. 개성 관광과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비교	81

그림 차례

그림 2-1. 관광총국의 조직도	34
-------------------------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북한은 관광을 체제선전의 수단으로만 활용했을 뿐 근본적으로는 관광을 자본주의 문화의 산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로 북한은 관광사업을 외화 확보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코메콘(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회원국들의 변화가 감지되고, 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의 보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화 부족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를 전후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체제전환을 시도하면서 북한의 경제협력 대상은 축소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경제난과 외화 부족문제를 심화시켰다.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은 1984년 합영법에서 관광을 공업, 건설, 운수, 과학, 기술과 함께 합영분야의 하나로 지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2년 제정, 발표한 합영법 시행세칙과 같은해 발표한 합작법, 외국인투자법에서 모두 관광을 합영, 합작, 외국인투자 대상의 분야로 공식 인정하였다.

1984년 관광을 합영사업 대상의 하나로 공식 발표한 이후, 중국은 북한의 주요 관광협력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1988년 44명의 중국 관광객

이 처음으로 신의주 단체 변경여행에 참여하였고, 이후 북·중 관광은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협력범위를 점차 넓혀갔다. 2006년 북한 여행을 하는 중국인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중국정부는 중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중국이 북한을 중국인 단체관광의 여행목적지로 개방하면서 양국간 관광협력은 재개되었다. 그 다음해인 2009년 북·중 관광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 관광협력은 2013년 2월 제3차 북핵실험이 감행되기 전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여행객의 70% 이상이 중국 관광객이었다.

이처럼 북한의 관광산업에서 중국은 현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관광협력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광산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직접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외화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데 반해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무역투자, 남·북 경협, 인력 송출, 관광협력은 합법적인 차원에서 활용되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무역투자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남·북 경협 역시 5.24조치 이후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력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는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북한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활동범위가 축소되었다. 반면 관광협력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경제제재에서도 제외될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와의 협력 범위와 규모도 증대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활용되어왔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광협력이 북한의 대외경제에서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의 관광협력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주요 관광협력국가인 중국과 북한 간의 관광협력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중 관광협력의 배경과 주요 법률, 행정기구를 정리하고, 북·중 관광협력 현황과 특징을 조사·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북·중 관광협력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화 수입규모는 보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남·북 경제협력의 주요 사업들이었던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 관광사업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외화규모와도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외화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북·중 관광협력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남·북 경험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 결론부분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관광객을 순수하게 여가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목적 국가의 관광수입은 관광객들이 여행을 목적으로 현지에서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모든 비용으로 정의한다. 세계관광기구(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관광객을 “고용이 아닌 사업이나 여가, 다른 개인 사유로 본인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루 이상 1년 미만 동안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¹⁾ 또한 세계관광기구는 관광지출비용을

1) World Tourism Organization(WTO), 2010,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 NY: UN & UNWTO, p. 37, “Tourist: A visitor(domestic, inbound, or

“관광객이 관광기간 동안 상품, 서비스, 귀중품 등을 구매하며 지출한 모든 비용”으로 정의한다.²⁾ 세계관광기구의 정의에 따라 2012년 북한을 방문한 전체 중국 방문객 수를 조사해보면, 이는 23만 7,000명에 이른다.³⁾ 이는 여가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뿐만 아니라 사업과 공무,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북한을 방문한 전체 중국 방문객들을 모두 합한 수치이다. 이들이 방북과정에서 지출한 외화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 발표한 통계자료는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출규모를 추산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순수하게 여기형태로 북한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들을 관광객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북·중 관광협력 실태를 조사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주요 내용,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북·중 관광협력의 배경과 관련 제도에 대해 기술하였다. 중국은 국가여유국을 중심으로 대북 관광협력을 전개하고 있고, 북한은 관광총국이 실무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북·중 관광협력 실태와 특징을 조사·분석하였다. 특히 구체적으로 관광 시기와 종류,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중국의 주요 도시와 여행사 정보, 주요 여행상품 정보, 2012년도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 추정 및 이들에 대한 주요 인적 정보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2012년도 중국의 주

outbound) is classified as a tourist(or overnight visitor), if his/her trip includes an overnight stay.”; WTO(2010), p. 10, “Visitor: A visitor is a traveller taking a trip to a main destination outside his/her usual environment, for less than a year, for any main purpose(business, leisure or other personal purpose) other than to be employed by a resident entity in the country or place visited. A visitor(domestic, inbound, outbound) is classified as a tourist(or overnight visitor), if his/her trip includes an overnight stay, or as a same-clau visitor(or excursionist) otherwise.”

2) WTO(2010), p. 72. “Tourism expenditure: Tourism expenditure refers to the amount paid for the acquisition of consumption goods and services, as well as valuables, for own use or to give away, for and during tourism trips.”

3) 한국관광공사(2013), 내부자료.

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들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규모를 추산하였으며, 추산된 수치는 다시 남·북 경협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외화규모와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이 조사, 분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북·중 관광협력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 조사, 통계분석, 국내외 북·중 관광협력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 정부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를 주로 활용한 부분은 북한과 중국의 관광 관련 법률과 행정기구들, 남·북 경협의 주요 사업들과 이들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이다. 북·중 관광협력의 실태분석은 선행연구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현장 조사 및 국내외 북·중 경제협력 및 관광협력 전문가, 정부관계자, 현장 실무자 등과의 인터뷰, 그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특히 연구진은 북한의 관광수입 추정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정부 관계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북·중 관광협력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실태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물과 정부기관들이 발표한 통계자료, 사업기관들을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하여 조사·분석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북·중 관광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는 본 연구를 통해 처음 시도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초조사에 특히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북·중 관광협력에 대한 실태과약은 일부 지역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조사, 발표되었다. 본 연구가 북·중 관광협력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처음 조사·분석했다는 측면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처음 시도된 연구이며 활용가능 자료에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인력과 시간, 비용 등의 다양한 한계요인으로 주요 도시에서 중국인들의 출국 및 인솔 허가증을 갖고 북

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국제여행사만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 도시로 지정된 곳은 베이징과 옌지, 훈춘, 투먼, 선양, 단둥이다. 이들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한 주요 요인은 해당 지역들이 변경 관광 또는 일반관광의 관문도시들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베이징과 옌지, 선양은 평양과의 직항노선이 개통되어 있으며, 훈춘, 투먼, 단둥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는 변경도시들이다. 본 연구에서 지정한 6개 도시 외에도 중국 내 대북 관광상품을 취급·판매하는 도시로는 상하이와 창춘 또한 포함이 된다. 상하이 역시 평양과의 직항노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도시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하이·평양 노선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고, 2012년 상하이에서 북한상품을 취급, 판매한 국제여행사들은 대부분 베이징에 있는 여행사들과 연합하기 때문에 상하이는 본 연구의 주요 도시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창춘을 포함한 다른 도시에서 북한상품을 판매하는 국제여행사들은 대체로 베이징, 옌지, 훈춘, 투먼, 선양, 단둥에 있는 국제여행사들과 연합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앞서 지적한 6개 도시에 있는 국제여행사들을 중심으로 북·중 관광협력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 수와 이들이 대북 관광을 위해 지급하는 평균지출액, 그 가운데 북한이 취하는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를 추산하였다.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 수와 이들의 평균지출액, 북한이 중국여행사로부터 받는 여행경비 규모는 중국의 중앙 및 지방여유국 정부관계자들과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고 대북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중국 사업관계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조사, 추정되었다. 특히 이 연구가 전수조사형태로 진행되었고,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패키지여행으로 진행되며, 북한 내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개인적인 지출이 크게 없다는 환경요인들을 고려할 때 관광객 수와 평균지출액을 통한 북한의 관광수입 추산방식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방법으로 평가된다.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제도적 여건

본 장에서는 북·중 관광협력의 실태에 대한 분석에 앞서, 양국간 관광협력이 추진된 배경·목적과 관광협력과 관련한 각종 제도적 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북·중 관광협력의 주요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관광협력 현황을 보다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양국의 정책추진방향 등을 전망하는 데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1.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가. 중국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중국이 북한과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아 추진되어왔다. 중국의 대북 관광은 1988년 4월 단둥시의 국제여행사가 조직한 신의주 1일 관광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점차 연지, 두먼, 훈

춘 등지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 지역에서 판매되던 대북 여행상품은 모두가 변경지역을 여행하는 상품에 국한되었다. 1990년 3월 장쩌민 총서기가 북한을 방문하고, 1991년 11월 김일성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1992년 중국은 북한과 대북 관광노선을 기존의 변경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01년 북한은 중국에 자국을 공식적인 관광목적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국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시설부족 및 기준미달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후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도박문제가 심화되면서 2006년 중국정부는 북한 관광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러한 조치와 맞물려 같은 해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그 해 7월 후이량위 중국 부총리의 북한 방문 후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는 2년간 중단되었다. 특히 중국 부총리의 방북 3달 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이는 양국간 인적 교류와 협력관계를 냉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8년 6월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인사 교류는 재개되었고,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같은 해 중국은 북한을 공식적인 방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되었던 2009년 10월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였고, 이를 전후로 중국은 북한과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국 정부에 의해 협력기반이 마련된 후 북·중 관광협력은 급속히 전개되었으나, 이러한 협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감행된 이후 중단되었다.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같은 해 4월 중국정부는 한반도 안보불안과 자국민의 신변안전을 이유로 대북 단체관광을 금지하였다.⁴⁾ 이미 3월에 김도준 조선관광총국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대북 관광을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다음달 4월 중국인들의 대

4) 중국정부의 대북 관광 금지조치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발표된 것이 아닌, 구두지침 형태로 여행사들에 전달되었다.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 정리 (2013. 6. 3-8).

북 관광을 중단시켰다. 중단조치 후 2개월이 지난 6월 28일 엔지에서 출발하는 금강산 단체관광상품은 출발이 확정되었으나, 대북 관광의 지속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중 관광협력의 재개 여부와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북핵문제를 기반으로 한 양국간 정치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과 이익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북한 내 인프라 개발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3성 진흥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동북3성 진흥전략은 대내적 차원의 국내 경제개발전략과 대외적 차원의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전략으로 구분된다. 국내 경제개발을 위해 동북3성 진흥전략은 라오닝성의 '5점1선' 계획과 지린성의 '창지투 사업', 헤이룽장성의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 계획으로 세분화되며,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개방 범위를 확대한다는 전략도 내포하고 있다.⁵⁾ '5점1선' 전략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대기지 3대산업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창지투 사업은 5대기지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사업은 6대기지 건설을 주요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교통, 물류 인프라 시설 구축을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과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방침을 마련하였다. 중국 중앙정부는 「동북지역 개방 확대 실시 촉진에 관한 의견 36호」 문건을 통해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우선지원방침을 표명하였으며, 지린성 정부 역시 북한과 '도로, 항구, 구역 일체화(路港區一體化)'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⁶⁾

5) 조명철·김지연(2010), 「GTI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Zhang H. (2009),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hinese Northeast region, *New Prospects for Regional-Leve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East Sea Rim*, Seminar Proceeding 09-04, pp. 291-300, Gangwon Province & Gangwon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표 2-1. 동북3성의 발전계획과 주요 내용

발전계획	주요 전략	중점 발전분야
5점1선	2대기지 건설, 3대산업 육성	- 2대기지: 설비제조업 분야 (자동차, 선박, 공작기계, 항공, 우주 등) - 3대산업: 첨단기술, 농산물가공, 관광·컨벤션
창지투자사업	5개기지 건설	- 5대기지: 자동차, 석유화학, 농산물가공, 현대 중국의학, 첨단기술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사업	6대기지 건설	- 6대기지: 장비제조, 석유화학, 에너지, 녹색식품, 의학, 임업가공

자료: 조명철·김지연(2010),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방안』, p. 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중 관광협력은 동북3성 진흥전략의 대외개방 확대정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실례로 2010년 말 중국은 단둥 랑터우 신(新)개발구와 신의주 남부의 용천을 연결하는 신(新)압록강대교 건설을 착공했으며, 2012년에는 훈춘 취안허통상구와 나진항을 잇는 북한 내 53Km의 비포장도로의 확장·포장 공사도 완료하였다.⁷⁾ 2012년 5월 중국은 북한과 지안-만포를 잇는 국경다리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압록강 벌등도(筏登島)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양측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⁸⁾ 같은 해 중국은 룡징시 삼합과 함경북도 회령을 연결하는 국경다리를 전면 보수하였으며, 북한과 훈춘·원정리를 새로 연결하는 신(新)두만강대교 건설 및 훈춘·나진을 잇는 철도 건설도 합의하였다. 2013년 2월 중국은 북한과 투먼·남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량 건설 계획도 합의하였다.⁹⁾ 이러한 변화들은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정책에 따른 결과이며, 동시에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이 북한의 필요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6) 조명철·김지연(2010); 윤승현(2009), 『두만강지역의 신개발 전략과 환동해권 확대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7) 『연합뉴스』, 『중국 지린성, 대북 교통인프라 확충 추진』(2013. 3. 27).

8) 『연합뉴스』, 『만포~지안 국경다리 건설 北이 주도』(2012. 7. 27).

9) 『연합뉴스』, 『中, 北 나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가속화』(2012. 9. 20); 연합뉴스, 『중국, 두만강에 북한 연결 교량 속속 추진가속화』(2013. 2. 28).

필요를 충족하는 상호 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증거로 평가된다.

셋째,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에 북·중 관광협력을 전개해왔다. 중국의 관광산업은 개혁개방 조치와 맞물려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인들의 해외관광은 홍콩 반환을 전후로 홍콩에 거주하는 가족, 친지들을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계기로 대중화되었다. 이후 1992년까지 중국은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중국인들의 공식적인 방문목적지로 지정하였다.¹⁰⁾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중국정부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중국은 관광산업을 총체적인 효과와 이익이 높은 국민경제의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중적인 현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¹¹⁾

중국이 관광산업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한 시기는 1990년대 이후이다. 1997년 중국 국무원은 국가여유국, 공안부와 공동으로 「중국국민 자비출국여행 임시관리방법(中國公民自費出國旅遊管理暫行辦法)」을 제정, 반포하였으며, 1999년 9월 중국의 내수확대와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설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全國年節及紀念日放假辦法)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국무원은 국경절과 춘절, 노동절을 7일간의 국경 휴일로 지정하고, 1999년 10월 1일 국경절을 기준으로 「황금연휴제도」¹²⁾를 추진하였다.¹³⁾ 이러한 변화로 중국인들의 관광문화는 점차 대중화되었으며, 중국정부 역시 2000년까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등을 중국의 공식여행지로 추가 지정하였다.¹⁴⁾ 중국 국무원은 2001년 4월 「관광산업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통지(關

10) 신용석·김현주(2012),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국 비자제도 개선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 신용석·김현주(2012).

12) '황금휴일제도란(黃金周)'란 국가가 지정한 7일간의 휴가제도를 의미한다.

13) 코트라(2007), 「해외경제속보: 中, 황금연휴(黃金周) 휴가 제도 계속 된다」.

14) 신용석·김현주(2012).

與進一步加旅遊業發展的通知 國發[2001]9號」를 발표하였으며,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을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법, 규정 등도 제정, 발표하였다. 여유국은 중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십오(十五)계획(2001~2005)’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중국을 세계 1위의 관광외화창출국가로 만들고, 중국인 해외여행 규모와 여행목적지를 확대하여 세계 4위로까지 성장시키며, 중국경제에서 관광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¹⁵⁾ 중국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따라 2008년까지 중국의 여행목적지는 137개 국가로 증가되었으며, 이 시기에 북한 역시 공식적인 방문목적지로 지정되었다.

나. 북한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북한이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추진, 강화해온 주요 배경은 외화 확보 및 인프라시설 구축을 통한 경제개발기반 마련으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은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주요 관광협력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북한은 1970년대까지 관광을 비생산적인 자본주의 문화이자, 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위협요인으로 단정하며 관광산업을 배척하였다. 1970년대까지 대북 관광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체제를 선전하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만 추진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시도함에 따라 북한의 경제협력범위는 축소되었고, 북한은 국제사회 변화들로 인해 외화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관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1986년 5월 북

15) 박기홍·김대관(200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 잠재력과 장애요인』, 통일연구원.

한은 국가여행관리국을 국가관광총국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그 다음 해인 1987년에는 세계관광기구(UNWTO: UN World Tour Organization)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87년부터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은 관광업을 국가사업의 일부로 채택하였다.¹⁶⁾ 북한은 1988년 11월 금강산국제관광회사(現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1953년 3월에 설립된 조선국제여행사, 1985년 3월에 설립된 조선국제청년관광사와 함께 대북 관광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여행사이다. 1984년 합영법이 제정된 이후 북한은 1992년 10월 합영법 시행세칙을 발표하였으며, 이 세칙 제1장 3조에서 관광업을 합영사업 범위에 포함시켰다.¹⁷⁾ 같은 시기 북한은 외국인투자법도 발표하였으며, 이 법 6조에서 북한은 관광업을 외국투자가의 투자범위에 포함시켰다.¹⁸⁾ 이러한 변화와 함께, 북한은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 등 관광협력과 관련된 법들도 추가로 발표하였다. 특히 북한은 단둥과 인접한 신의주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 지구로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신의주를 특별 행정구로 지정하고,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¹⁹⁾

그러나 사회주의의 기본이념하에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북한의 방침으로 인해 북한의 관광산업은 한계에 직면하였다. 특히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안보불안과 국제사회의 제재, 북한의 열악한 관광인프라 시설, 제한된 관광상품 등 다양한 제약요인은 북한의 관광산업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진행되기보다는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 편

16) 김철원(2007),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통일부 통일교육원.

17) 『북한합영법시행세칙』(1992. 10. 16), 정무원 결정 제148호.
이 세칙 3조에서 규정한 합영사업의 범위에는 전자, 자동화공업, 금속공업, 채취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경공업, 농수산업, 건설, 운수, 관광업이 등이 포함되었다.

18) 『북한외국인투자법』(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제6조.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 투자할 수 있다.'

19) 한국관광공사(2011), 『2011 북한 관광백서』.

중되어 진행되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였다. 중국은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이동거리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주의 문화가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요 관광협력국가가 되었다. 실제로 북한 관광산업에서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 북한을 여행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였으나,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서 80% 수준으로 확대되었다.²⁰⁾

둘째, 북한이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추진, 강화한 동기의 하나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있다. 중국은 동북3성을 개발하기 위해 동해출로(東海出路)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나진, 선봉, 청진, 원산 등 동해지역에 항구가 있는 북한은 항구사용권을 중국에 제공하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인프라 건설을 지원받고 있다. 북한의 인프라 건설은 북·중 경제협력이라는 거시적인 협력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국이 물류이동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력 교류도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조치이기 때문에 관광협력의 배경으로 평가된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중국은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북한의 주요 변경지역에 국경다리 건설, 도로 개보수 및 확장, 항만공사, 철도 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20) 한국관광공사(2012), 『관광통계』, 북한 관광정보: 북한 관광 개황, 인용자료, <http://kto.visitkorea.or.kr/kor/biz/north/tour/st/board/view.kto?id=293355&isNotice=false&instanceId=136&rnum=11>(검색일: 2013. 5. 24); 최철호(2011), 『북중 관광 협력의 현황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10호, pp. 79-90, 한국개발원.

2. 북·중 관광협력과 연계된 주요 법률 및 행정 기구

가. 정책 마련에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

1) 중국

중국의 대북 관광 협력정책은 2010년 함께 발표된 △ 변경여행 임시 관리방법(边境旅游暂行管理办法)과 △ 중국 단체관광객의 북한 여행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中国旅游团队赴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旅游业务的通知) 등의 법률기반에 근거한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2010년 12월 변경여행 임시관리방법을 발표하였다. 총 16조로 구성된 이 법에서는 중국인들의 변경여행에 대한 기본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중국의 주요 변경여행 대상국 중 하나가 북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은 중국의 대북 관광 협력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률 중 하나로 평가된다.

‘변경여행 잠정관리방법’ 중 중국인들의 대북 관광과 연계해 살펴볼 주요 내용은 크게 9가지로 정리된다. 1조에서 중국은 변경여행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변경지역의 경제번영과 사회안정을 촉진하며, 주민들의 교류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변경여행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조에서는 변경여행이 정의되고 있다. 중국이 정의하는 변경여행이란 비준을 받은 여행사가 중국 및 인근 국가의 국민들을 조직하고 맞아들이는 여행을 의미한다. 비준을 받은 여행사는 지정된 변경지역의 출입구를 통해 단체여행객들을 출·입국시키며, 여행 지역과 기한은 양측 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여행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3조와 5조에서는 변경관광을 관리, 지도하는 중국 정부기관이 국가여유국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여유국의 역할과 업무가 기술되어 있다. 6조에서는 변경관광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여행사의 기준이 설명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변경관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행사(이

하 국제여행사)로 비준받기 위해, 여행사는 국무원이 지정한 변경지역의 시나 현에 위치해야 하고, 국가여유국으로부터 외국 관광객의 접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제여행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여행사는 운송능력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접대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여행사는 상대국가의 변경지역 관광부서와 관광협력 의향성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즉 대북 관광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제여행사는 여유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동시에 북한의 관광 관련 부서와도 협력의향서를 체결해야 한다. 7조에서는 국제여행사가 상대국가의 변경지역 관광부서와 체결할 의향성 협의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8조에서는 변경관광업무 신청순서가 기록되어 있다. 9조에서는 중국 국민의 변경관광 참여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중국인은 변경관광에 참여할 수 있으나, 반드시 비준 받은 1류 여행사(국제여행사)를 통해서만 출국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만 현지 여행을 할 수 있다. 10조에서는 관광객들이 여권이나 국제여행 증명서, 양국 정부가 승인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여행지를 방문할 수 있음이 표기되어 있다.²¹⁾

「중국 관광객의 북한 여행 업무에 관한 통지」(이하 대북 관광 통지)는 중국인의 대북 관광에 대한 지침들을 명시하고 있다. 대북 관광 통지의 기본골격은 '변경여행 잠정관리 방법'과 유사하다. 다만 이는 2009년 중국이 북한과 체결한 관광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한 세부적인 협력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대북 관광 통지는 크게 9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1항에서는 대북 단체관광은 중국 여유국이 비준한 특별 경영허가를 받은 국제여행사에만 취급, 인솔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3항에서는 비준 받은 국제여행사는 반드시 북한 당국으로부터 추천받은 여행사 가운데 협력대상을 선정하고, 협

21) 김지연(2013), 「북·중 관광협력 실태분석과 전망」, 『지역경제포커스』, 제7권 3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中華人民共和國國家旅游局(2010), 邊境旅游暫行管理辦法, Retrieved on July 4 from <http://www.cnta.gov.cn/html/2010-12/2010-12-15-13-44723.html>(검색일: 2013. 5. 24).

력 대상과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대상과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6항에서는 중국인들의 북한 여행기간 동안 중국 인솔자와 북한 인솔자가 함께 동행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²²⁾

중국이 2009년 북한과 체결한 「중국 관광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행 실시 방안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북·중 관광협력 양해각서)는 대북 관광 통지의 근간이 되었다. 현재 해당 양해각서는 외교문서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관광협력 양해각서들과 비교할 때 기본구조 및 주요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²³⁾ 따라서 중국이 우리나라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준으로 북·중 양해각서를 추정해보면, 해당 양해각서에는 단체관광객 수의 기준과 양국간 관광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²⁴⁾

2) 북한

북한의 관광정책과 관련 법률은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대내적 차원의 관광정책 및 관련 법률은 북한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 반면, 대외적 차원의 정책 및 관련 법률은 협력국가와의 관계 및 북한을 여행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내적 차원의 관광정책은 사회주의 노동법에 근거하여 마련,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노동법 제12조와 62조, 67조에 따르면, 관광은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해 국가가 휴식을 보장하는 복지 차원의 활동으로 규정한다.²⁵⁾

22) 中華人民共和國國家旅游局(2010), 關於開展中國旅遊團隊赴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旅遊業務的通知 旅國國際發 5號.

23) 중국 여유국 관계자 면담내용(2013. 6. 3-8). 중국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인용.

24) 문화관광체육부(2012. 12. 12), 『한중 공정관광 협력 및 중국 서부 관광시장 활성화』, 공감코리아 뉴스, 인용자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66524&call_from=naver_news(검색일: 2013. 5. 24).

25)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1978. 4. 18),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대중 관광협력은 북한이 대외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관광정책 및 관련 법률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 합영법 및 시행세칙 △ 합작법 △ 외국인투자법 △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이하 관광규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금강산 관광지구법 등의 법률적 기반에 근거해 수정, 보완되었다. 북한은 1984년 제정한 합영법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합영은 공업, 건설, 운수, 과학, 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를 명시하면서 관광을 합영분야로 공식 인정하였다.²⁶⁾ 이후 1992년 10월 북한은 정무원 결정 제148호로 합영법 시행세칙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세칙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합영은 전자 및 자동화 공업, 금속공업, 채취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경공업, 농업, 수산업, 건설, 운수, 관광업을 비롯 인민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관광업을 합영사업의 한 분야로 인정하였다.²⁷⁾ 같은 해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된 합작법 제3조와 외국인투자법 제6조에서도 북한은 관광을 각각 합작 및 외국인투자 분야로 정식 공표하였다.²⁸⁾

제12조. 노동과 휴식을 윤택 결합하며 근로자들의 노동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노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제62조.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8시간 노동제, 유급휴가제, 국가기부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67조. 국가는... 관광탐승 등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문화적 휴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1984);

한국관광공사(2005), 『관광자료실: 북한의 관광산업 현황 및 관광특구 확대 가능성』, p. 3에서 재인용. 인용자료: <http://kto.visitkorea.or.kr/kor/biz/north/data/bookcda/board/view.kto?id=294708&isNotice=false&instanceId=73&num=17>(검색일: 2013. 5. 24).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 시행세칙(1992. 10. 16), 정무원 결정 제148호.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1992. 10.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1992. 10.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제3조: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의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봉사 부문에도 조직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보다 구체화된 관광규정과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관광법규를 발표, 시행하였다. 북한은 1996년 7월 15일 전체 5장 35조로 구성된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의 변경여행 임시관리방법 및 대북 관광 통지와 직접 연계되는 조항은 약 8개이다. 관광규정 제3조에서는 대북 관광이 북한과 관광협정국이나 관광협력을 맺은 기관간에 체결한 관광계약에 따라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5조에서는 관광객의 지대출입이 관광여행 승인문건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10조에서는 북한 여행은 단체여행과 개별 여행이 모두 가능하나 11조, 13조, 18조에 따라 관광객들은 출발 준비부터 관광일정 완료까지 모든 관광여정이 북한에서 지정한 관광회사나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북한당국이 지정한 여행사의 도움 없이 개별적으로 북한을 여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 외에도 16조에서는 관광객들이 여행하는 기간에는 북한 법과 규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23조에서는 여행 경비는 입국 전 완불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²⁹⁾

북한은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이하 신의주특별법)과 같은 해 11월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채택, 발표하였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신의주특별법은 총 6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의주특별행정구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북한은 신의주특별법 1조에서 신의주를 특수 행정단위로 규정하고, 13조에서 신의주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 지구로 개발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³⁰⁾ 이처럼 북한이 발표한 신의주특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제6조: 외국인투자자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 투자할 수 있다.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2002. 9. 12).

법은 이후 중국과 관광을 포함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신의주특별법이 발표된 지 2달 후, 북한은 그해 9월 금강산 관광지구법(이하 금강산법)을 채택, 발표하였다.³¹⁾ 금강산은 남북관광협력부터 북·중 관광협력까지 북한의 주요 여행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금강산법은 중국인들의 금강산 관광에 적용되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금강산법은 2002년 제정 이후 2013년 현재까지 2번 수정, 보충되었다. 2003년에 개정된 법은 처음 제정된 2002년 구법과 비교할 때 크게 수정된 부분이 없었던 반면, 2008년 故)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남·북 관광이 중단된 이후 2011년 개정된 금강산법은 2003년 구법과 비교할 때 상당 부분이 수정, 보충되었다.³²⁾ 최근 개정된 금강산법을 구법과 비교할 때 가장 현저하게 변화된 사항은 북한의 금강산 특구 개발 및 이를 통한 외국인투자자, 외국 관광객 유치 의지가 한층 구체화되고 강력해졌다는 사실이다.³³⁾

남·북 관광협력이 중단된 후 북한은 기존 금강산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법규의 일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법과 합영법 내용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면 2011년에 개정된 금강산법 제1조에서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가 국제관광지구임을 명시하고 금강산관광특구법의 사명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남북관광이 진행되던 당시 적용되던 2003년 법규에는 없었던 신규 조항이며, 이와 유사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 관광지구법(2002. 11. 13).

32) 북한은 1996년 제정한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제6조를 통해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08년 故)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2년 6월 발표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광규정」 제7조 5항 및 제13조 1항에 반영되었다.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1996)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광규정(2012. 6. 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93호로 채택.

33) 금강산법의 자세한 변화 내용과 특징은 보고서 [부록 1]을 참고.

한 조항은 북한의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1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 제1조에서도 북한은 모두 각 법의 사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상기 세 가지 법의 각 1조가 추구하는 방향 역시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 관광객 유치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³⁴⁾ 또한 2011년에 개정된 금강산법 제5조에서 북한은 투자자들의 재산보호원칙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외국인투자법 19조의 투자재산 보호 조항과도 기본맥락을 같이한다. 최근 개정된 금강산법 23조에서는 북한이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 역시 외국인투자법 제10조항의 외국투자자들의 입출국편리보장조항과 유사하다. 최근 금강산법 28조에서는 지사, 대리점, 출장소의 설립 허용 및 승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외국인투자법 및 합영법 각 13조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구 내 계좌 개설 및 노동력 채용을 새롭게 명시한 금강산법 29조 및 33조 역시 각각 합영법 26조 및 외국인투자법 16조, 합영법 26조와 일정 부분 유사하다. 보험가입조항이 추가된 금강산법 31조는 합영법 31조와 유사하며, 외화 반출입과 송금, 재산반출 허용을 명시하는 35조는 외국인투자법 20조와 그 맥을 같이한다. 경영활동과 연계된 물자의 자유로운 반출입 허용이 명시된 37조는 합영법 5조와 유사하며, 관세부과 및 면세 대상이 명시된 38조는 외국인투자법 17조 및 합영법 38조와 기본 틀을 같이한다.

이러한 금강산법 재정비는 북한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한국의 역할과 한국이 차지하던 비중을 외국투자자 및 외국 관광객들로 대체시키겠다는 북한의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금강산 특구의 관광객 대상은 舊) 금강산법과 최근 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서 모두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11년 신설된 금강산법 11조를 통해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20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2011).

북한은 17조를 통해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통신수단 이용조항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22조에서는 관광특구 내에서 가능한 행사종류와 활동범위도 확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북한은 남·북 관광협력의 자리를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메우려 하고 있으며, 외국투자자 및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법률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비해 한층 친화적인 투자 및 관광 환경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나. 주요 행정기구

1) 중국

중국의 관광정책과 관련 규정을 계획, 실행, 평가하고, 여행사들을 관리하는 등 국가 차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처는 국가여유국(國家旅遊局)이다. 따라서 국가여유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중국의 관광협력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여유국은 정책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華人民共和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라는 상위기관을 두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대외적으로는 13개 국가 및 지역에 16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1개 여유발전위원회와 32개의 지방여유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이 설치한 16개의 지국은 도쿄, 오사카, 싱가포르, 카트만두, 서울, 홍콩(아시아여행교류센터), 뉴욕, 캘리포니아, 토론토,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마드리드,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에 위치하며, 평양에 별도로 설치된 사무소는 없다.³⁵⁾ 지역별 관광국을 살펴보면, 베이징여유국은 2011년 5월 관광사업을 전략적 핵심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그 명칭을 여유발전위원회로 변경하였

35) 중국 국가관광국 서울지국, 『관광국 안내: 국가관광국』, <http://www.visitchina.or.kr/07/01/> (검색일: 2013. 7. 8).

다.³⁶⁾ 중국여유국은 상하이, 텐진, 충칭 등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 32개의 지방여유국을 설치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공급받으며, 해당 지역의 관광업무를 처리하고 해당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국가여유국은 7개 부서와 6개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7개 부서는 종합협력부, 정책법규부, 여행촉진 및 국가연락부, 기획발전 및 재무부, 질량규범 및 관리부, 인사노동 교육부, 노간부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며, 6개 직속기관에는 국가관광국 기관서비스센터, 국가관광국 정보센터, 중국관광협회, 중국여행신문사, 중국여행출판사, 중국여행관리간부학원이 포함된다.³⁷⁾

국가여유국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정책입안과 행정업무 관장, 관광시장 개척, 상품 개발 및 홍보, 여행통계업무 처리, 관광 대외교류 추진 및 관광협정 체결, 지역 관광행정기관 지도 및 직속기관 관리, 여행교육 및 전문가 양성업무 지도, 국무원 위탁사항 처리 등으로 요약된다.³⁸⁾

2) 북한

북한의 관광업무는 내각 산하의 국가관광총국이 총괄한다. 그러나 이는 내각 산하의 225개의 기타 단체 중 하나일 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장관급 수준의 중앙부처기관은 아니다. 국가관광총국은 1953년 8월 여행관리국으로 출발하였으며, 이는 1986년 5월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국가관광총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관광총국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북한의 관광지구 개발을 계획하고, 신규 관광상품을 조사, 개발하며, 이를 다른 나라에 홍보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 등이다. 국가관광총국은 [그림 2-1]과 같이 관광선전국, 시장개발국, 일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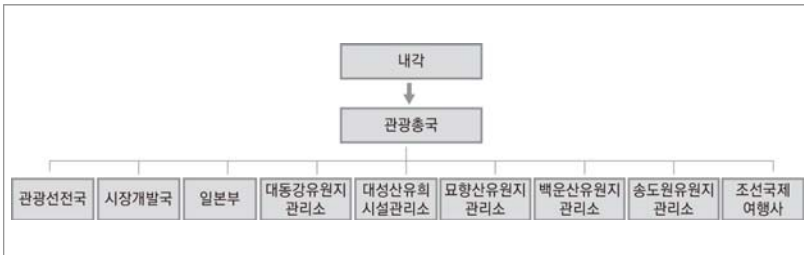
36) 인민일보, 「베이징시 여유국, 여유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http://www.re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검색일: 2011. 5. 23).

37) 중국 국가관광국 서울지국, 「관광국 안내: 국가관광국」.

38) 중국 국가관광국 서울지국, 「관광국 안내: 국가관광국」.

대동강유원지관리소, 대성산유희시설관리소, 묘향산유원지관리소, 백운산유원지관리소, 송도유원지관리소, 조선국제여행사 등의 주요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총국의 주요 책임자는 2013년 7월 현재 김도준 총국장과 고연식, 김동화, 채화섭, 조성걸, 강철수, 리건호, 문대길 7명의 부총국장, 조성규 조선국제여행사 지배인 등이 있다.³⁹⁾

그림 2-1. 관광총국의 조직도



자료: 통일부(2013a).

다른 나라 여행사들과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여행사에는 조선국제여행사, 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관광총국 산하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여행사들이다.⁴⁰⁾ 이 중 조선국제여행사는 1953년 8월에 설립된 북한 최초의 여행사이며, 다른 나라 여행사들과 상품계약, 관광 교류 및 서비스 제공 등 대북 관광과 연관된 실무를 담당한다.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관광총국은 중국 베이징과 단둥에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에 있는 주)중외여행사는 관광총국의 일본 총대리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국제여행사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상품은 제1여행사가 취급하며,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제2

39) 통일부(2013a), 『2013 북한 주요 기관·단체 인명록』.

40) 김지연(2013), p. 6.

여행사가 맡아 처리하며, 유럽, 미주, 대양주 등 서구지역 상품은 제3여행사에 의해 처리된다.

표 2-2. 조선국제여행사 내 지역별 담당부서

구분	주요 담당지역
제1여행사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제2여행사	일본,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태지역 국가들
제3여행사	유럽, 미주, 대양주

자료: 김철원(2007), p. 50.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 현황 분석

이번 장에서는 북·중 관광협력의 전반적인 실태와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실질적으로 북한 관광객의 중국 방문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기본적으로 중국 관광객의 북한 방문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북·중 관광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내 각 여행사 정보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1. 관광 시기와 종류

북·중 관광협력은 양국간 관광객이 상호 왕래하기보다는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여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북한 관광객 수는 4,500명인 반면, 북한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 수는 베이징, 옌지·훈춘·투먼, 선양·단둥 출발지만 기준으로 할 때 약 5만~6만 명이다.⁴¹⁾ 중국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41) 中國國家旅遊局(2013), 『2012年 1-12月入境旅遊外國人人數(按目的分)』, Retrieved on 2013. 7. 8. from <http://www.cnta.gov.cn/html/2013-1/2013-1-17-17-13-54943.html>(검색일: 2013. 5. 24); 김지연(2013).

2012년 1년간 중국을 방문한 전체 북한 방문객 수는 18만 600명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비자를 받아 중국에 장기체류하는 북한 근로자·선원은 7만 9,600명으로 전체 방문자의 44.1%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회의 참석 및 사업 목적으로 중국을 단기간 방문한 북한 방문자 수는 5만 5,200명으로 전체 방문자의 30.6%를 차지하며, 여행·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관광객 수는 4,500명으로 전체 방문자의 2.5%를 차지한다. 친척 및 친구 방문 형태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방문자 수는 200명으로 전체의 0.1%를 차지하며, 그 외 기타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방문자 수는 4만 1,100명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한다.

표 3-1. 2012년 중국을 방문한 북한 방문객 정보

구분	회의 참석, 사업	관광, 여행	친척, 친구 방문	근로자, 선원	기타	소계
만 명	5.52	0.45	0.02	7.96	4.11	18.06
%	30.6	2.5	0.1	44.1	22.8	100

자료: 中國國家旅遊局(2013), 「2012年 1-12月入境旅游外国人人数(按目的分)」.

중국 관광객의 대북 관광은 매년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된다. 이처럼 대북 관광이 봄, 여름,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북한의 열악한 관광인프라 시설에 기인한다. 북한은 제설문제와 전력·에너지부족, 제한된 숙박시설, 기타 부족한 관광인프라 시설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 시기에만 외국인에게 대북 관광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통행증을 갖고 여행하는 변경관광과 비자를 받고 여행하는 일반관광으로 구분된다. 변경관광의 주요 방문지역은 나진·선봉, 남양, 온성, 신의주, 칠보산 등의 북·중 접경지역이 중심이며, 일반 관광은 평양과 묘향산, 금강산, 개성 등 북한 내륙지역이 중심이 된다.

변경관광은 도보, 차량, 기차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0~2,500위안이다. 변경관광

중 당일코스는 투먼에서 출발하는 남양·온성 상품과 단둥에서 출발하는 신의주 관광이 있으며, 1박 2일 상품에는 옌지와 훈춘에서 출발하는 나진·선봉 관광이 있다. 3박 4일과 4박 5일 상품은 모두 칠보산 관광이며, 주요 출발지역은 옌지와 투먼이다.

표 3-2. 변경관광의 주요 상품내용: 출발·도착지, 이동수단, 비용을 중심으로

기간	출발지	관광도시	이동수단	1인당 여행비용(RMB)
무박	투먼	남양·온성	도보 및 차량	700~800
	단둥	신의주	차량	800~900
1박2일	옌지, 훈춘	나진·선봉	차량	800~1,000
3박4일	투먼	칠보산	차량	1,700~2,000
4박5일	옌지, 투먼	칠보산	기차	2,000~2,500

자료: 중국 현지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일반관광은 비행기, 기차, 차량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나 그 범위는 약 1,700~6,500위안이다. 일반관광은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박 4일 일정에서 시작하며, 4박 5일 일정과 5박 6일 일정, 6박 7일 일정으로 세분화된다. 3박 4일 일정으로 구성된 주요 여행상품은 △ 옌지와 선양, 베이징에서 각각 비행기를 타고 평양과 묘향산을 관광하는 상품 △ 옌지에서 비행기를 이용하여 평양·금강산을 여행하는 상품 △ 단둥에서 기차를 이용한 평양·묘향산 여행상품 등이 있다. 4박 5일로 구성된 주요 여행상품에는 △ 단둥에서 기차를 이용한 평양·묘향산 관광 △ 옌지, 선양,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이용한 평양·묘향산 △ 옌지에서 비행기로 출발하는 평양·금강산 관광 △ 옌지에서 차량과 호화 유람선(황성호)을 이용해 금강산을 방문하는 여행상품 등이 있다. 5박 6일 상품은 평양에서 단둥을 경유하여 평양과 묘향산을 여행하는 상품이 있으며, 6박 7일 주요 상품에는 평양에서 기차로 단둥을 경유해 평양·묘향산을 여행하는 상품과 △ 옌지에

서 출국은 차량과 유람선, 입국은 비행기를 이용해 평양·금강산을 여행하는 상품 등이 있다.

표 3-3. 일반관광의 주요 상품내용: 출발·도착지, 이동수단, 비용을 중심으로

기간	출발지	관광도시	이동수단	1인당 여행비용(RMB)
3박4일	엔지, 선양	평양·묘향산	비행기	3,900~4,200
	베이징			4,300~4,700
	엔지	평양·금강산		4,000~4,400
	단둥	평양·묘향산	기차	2,800~3,000
4박5일	단둥	평양·묘향산	기차	3,800~4,000
	엔지, 선양, 베이징		비행기	4,600~5,300
	엔지	평양·금강산	비행기	4,600~5,300
	엔지	금강산	차량, 선박(유람선)	3,900~4,900
5박6일	평양(단둥 경유)	평양·묘향산	기차	3,400~3,900
6박7일	평양(단둥 경유)	평양·묘향산	기차	3,900~4,400
	엔지	평양·금강산	차량, 선박, 비행기	5,500~6,500

자료: 중국 현지 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중국인들의 입출국을 위해 요구되는 증명서는 관광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변경관광은 통행증과 중국공민증으로 입출국이 가능한 반면 일반관광은 비자를 필요로 한다. 통행증은 변경지역에 소재한 북한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되며, 소요시간은 중국인의 경우 약 1~5일, 외국인의 경우 약 7~10일이다.⁴²⁾ 일반관광의 입출국은 비자를 소지해야 하는 관계로 준비절차가 변경관광에 비해 다소 까다롭다. 북한비자는 베이

42) 무박으로 방문하는 여행상품의 통행증 발급에 필요한 시간은 1일 정도가 소요되고, 1박 2일 상품에 대한 통행증 발급은 3일 정도가 소요되며, 3박4일 이상 일정에 대한 통행증은 5일 정도가 소요된다. 참고로 소요일은 모두 평일(Business day)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서류는 컬러 증명사진 2~3장과 여권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이다. 중국 현지 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3~8).

징, 선양에 소재한 북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서류심사도 한층 복잡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통행증 발급에 비해 길게 소요된다.⁴³⁾ 비자심사는 중국인의 경우 7~10일 정도가 소요되며, 외국인은 약 14~21일이 소요된다. 북한의 통행증 및 비자 신청은 다른 나라의 비자신청과는 달리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중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여행사와 북한 대사관, 영사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 심사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⁴⁴⁾

2. 중국 내 북한 여행상품 취급 도시 및 여행사 현황

중국에서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는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과 단둥, 베이징 등이다. 이들은 국경을 마주하는 접경지역이거나 또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직항노선이 있는 지역이다. 옌지와 훈춘, 투먼, 단둥 등은 북한과 접경을 마주하는 변경지역이며, 해당 지역에서는 일반 여행과 변경상품이 함께 취급, 판매되기는 하나 변경상품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선양, 베이징 등 직항로가 개설된 주요 지역에서는 일반관광상품이 주력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을 출국시키고 북한에서 이들을 인솔할 수 있는 여행사는 중국 여유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북한이 지정한 여행사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국제여행사들로 한정된다.⁴⁵⁾ 국제여행사로 허가받은 여

43) 제출서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비자용 컬러 사진 2~3장, 신분증 사본, 북한 비자 신청서.

44) 중국 현지 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3~8).

45) 중국의 국내여행사도 북한상품을 취급, 판매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내여행사의 사업 범위는 여행객들을 모집하는 수준까지이다. 국내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들은 국제여행사로 인도되며, 관광객들은 최종 북한상품 취급허가서를 갖고 있는 국제여행사를 통

행사는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 모두 1,864개가 존재한다.⁴⁶⁾ 이 중 중국인들을 출국시키고 북한 내에서 관광일정도 진행할 수 있는 여행사는 북한당국이 지정한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행사로 한정된다. 양국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행사는 엔지, 훈춘, 두먼에 12~15곳이 존재하며, 선양, 단둥에는 6~10곳, 베이징에는 8~10곳이 존재한다.⁴⁷⁾ 이처럼 북한 여행이 특정 여행사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주요 원인은 북·중 양국이 체결한 ‘변경여행 임시관리방법’ 및 ‘중국 관광객의 북한 여행 업무에 관한 통지’라는 법률기반에 따른 결과이다.⁴⁸⁾

해 출국과 북한 여행을 할 수 있다. 여유국으로부터 국제여행사 업무를 비준 받기 위해서 국제여행사를 설립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은 법인 소유로 등록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1년 정도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나 기관은 전화, 팩스, 복사기, 업무용 컴퓨터 등 여유국이 지정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사무실 확보에 필요한 토지와 사무기기 외에도 개인이나 기관은 관광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손실보조를 할 수 있도록 150만 위안(RMB)의 보증금을 여유국에 예치해야 한다. 이 예치금은 사업이 종료된 후 찾을 수 있으며, 사업 운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여유국은 여행사가 예치한 보증금을 가지고 피해자 또는 피해기관에 손해를 배상한다. 엔지, 훈춘, 베이징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면담결과 및 여유국 관계자 면담내용 정리(2013. 6. 3-8); 旅行社條例實施細則(2009), Retrieved on 2013. 7. 9 from, http://www.legaldaily.com.cn/0801/2009-04/30/content_1084842.htm(검색일: 2013. 5. 24).

46) 중국 여유국 홈페이지 정보 및 관계자 면담자료 인용(2013. 6. 3.~8),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Authorized Travel Agencies for Outbound Travel By Chinese Citizens. Retrieved on 2013.6.21. from, <http://en.cnta.gov.cn/TravellnChina/Forms/TravellnChina/TravelAgencies.aspx?Area=TianJin>(검색일: 2013. 5. 24).

47) 엔지, 훈춘, 베이징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면담결과 및 여유국 관계자 면담 내용 정리(2013. 6. 3-8).

48) 中華人民共和國國家旅游局(2010), 關於開展中國旅遊團隊赴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旅遊業務的通知 旅國際發; 中華人民共和國國家旅游局(2010), 邊境旅遊暫行管理辦法, <http://www.cnta.gov.cn/html/2010-12/2010-12-15-15-13-44723.html>(검색일: 2013. 6. 20).

표 3-4. 중국 내 비준 받은 국제여행사의 지역별 분포도

지역	개수	지역	개수	지역	개수	지역	개수
베이징	315	상하이	46	후베이	46	윈난	35
톈진	30	장쑤	98	후난	35	시짱	4
허베이	52	저장	108	광둥	220	산시	31
산시	51	안후이	41	광시	47	간쑤	15
내몽고	39	푸젠	62	하이난	29	칭하이	13
랴오닝	96	장시	35	충칭	35	닝샤	16
지린	47	산둥	112	쓰촨	50	신장	23
헤이룽장	57	허난	36	구이저우	13	신장병단	9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도표화.

옌지와 훈춘, 두먼에 소재한 국제여행사 중 출국권을 갖고 북한상품을 취급, 판매하는 여행사는 약 12~15곳이며, 선양, 단둥에는 6~10곳, 베이징에는 8~10곳이 있다. 옌지에서 출경권을 갖고 북한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국제여행사에는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옌벤펜외사국제여행사(延边外事国际旅行社), 옌지시천우국제여행사(延吉市天宇国际旅行社), 옌벤펜용국제여행사(현 延边鹏龙国际旅行社, 구 옌벤펜강휘국제여행사(延边康辉国际旅行社), 옌벤펜휴일국제여행사(延边假日国际旅行社 舊 옌벤펜천지국제여행사(延边天池國際旅行社) 등이 있다.⁴⁹⁾ 훈춘에는 삼강국제여행사(三疆国际旅行社) 등을 포함해 3~4곳이 있으며, 두먼에는 두먼시두먼강국제여행사(图们市图们江国际旅行社) 1곳이 있다. 선양과 단둥에는 선양국제여행사(沈阳国际旅行社), 단둥중국국제여행사(丹东中国国际旅行社), 랴오닝홍양국제여행사(辽宁鸿祥国际旅行社), 단둥해외국제여행사(丹东海外国际旅行社) 등을 포함해 6~10여 개의 국제여행사가 출국권을 갖고 북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베이징에는 중국국제여행사총사(中国国际旅行

49) 國家旅游局公布最新邊境游旅行社資質名單(2012), Retrieved on June 25, 2013 from <http://go.huanqiu.com/news/2012-10/3193931.html>(검색일: 2013. 6. 20);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인터뷰(2013. 6. 3-8).

社总社), 베이징중국국제여행사(北京中国国际旅行社总社), 중국강휘국제여행사(中国康辉国际旅行社), 중국부녀여행사(中国妇女旅行社) 등을 포함해 8~10곳의 국제여행사가 출국권을 갖고 북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⁵⁰⁾

표 3-5. 주요 도시에 소재한 주요 대북 여행상품 판매 여행사

소재지	주요 여행사
옌지	외사국제여행사(外事国际旅行社), 천우국제여행사(天宇国际旅行社), 봉용국제여행사(鹏龙国际旅行社), 천마국제여행사(天馬國際旅行社), 태평양국제여행사(太平洋國際旅行社), 휴일국제여행사(假日國際旅行社), 동북아객운집단러유유한공사(東北亞客運集團旅遊有限公司), 문화국제여행사(文化國際旅行社) 등 10여 곳
훈춘	삼강국제여행사(外事国际旅行社) 등 3~4곳
투먼	투먼시투먼강국제여행사(圖們市圖們江國際旅行社)
선양·단둥	선양국제여행사(沈陽國際旅行社), 단둥중국국제여행사(丹東中國國際旅行社), 라오닝홍양국제여행사(遼寧鴻祥國際旅行社), 단둥해외국제여행사(丹東海外國際旅行社) 등 10여 곳
베이징	중국국제여행사총사(中國國際旅行社總社), 베이징중국국제여행사(北京中國國際旅行社總社), 중국강휘국제여행사(中國康輝國際旅行社), 중국부녀여행사(中國婦女旅行社) 등 10여 곳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도표화.

국제여행사들은 상품별 최소 출발인원 규정을 갖고 사업을 운영한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최소 출발인원 수는 일반적으로 16~18명이다. 이 경우 여행사는 개별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하고, 이에 따라 여행일정을 추진한다.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수단과 북한 내 관광이라는 두 가지 최소 출발인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교통수단에 대한 최소 출발인원은 약 80~100명이며, 이때의 최소 인원은 연합으로 모집된 승객 수를 의미한다. 교통수단에 대한 최소 출발인원이 모집되면, 국제여

50)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 정리(2013. 6. 3~8).

행사들은 비행기 또는 기차 사업권을 확보한 여행사로부터 항공권 또는 기차표를 구매한다. 기관별로 모집한 관광객 수가 16~18명 이상이면 국제여행사는 북한에 들어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관광일정을 진행한다. 만일 최소 출발인원이 모객되지 못했을 시, 국제여행사는 이미 모객된 관광객들을 다른 국제여행사로 인도하며, 이 과정에서 여행사들은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받는다. 소개비 규모는 대략 판매되는 여행상품 비용의 8~13%이나 정확한 금액은 여행시간 합의한 내용 및 여행상품의 종류, 거래종류에 따라 차이를 갖는다.⁵¹⁾ 수수료가 높을수록 상품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수수료를 조정하며 많은 수의 여행객을 확보하려 한다.

여유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국제여행사 중 일부는 고려항공 및 북한 철도청에 추가로 보증금을 예치하며, 이렇게 보증금을 예치한 국제여행사는 해당 교통수단 이용권 또는 특정 여행상품에 대해 독점권을 확보한다. 실례로 옌지에서는 천우여행사가 고려항공 좌석확보예약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옌지에서 비행기로 북한에 들어가려는 모든 관광객은 천우여행사를 통해서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칠보산 관광상품에 대한 사업독점권은 투먼시투먼강국제여행사가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옌지나 단둥, 베이징 등 중국 어느 지역에서든지 칠보산 여행을 목적으로 모집된 관광객은 최종 투먼시투먼강국제여행사로 인도된다.⁵²⁾

51)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2013. 6. 3~8).

52)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 정리(2013. 6. 3~8).

3. 주요 여행상품 정보: 일정, 지역, 이동수단, 비용 등을 중심으로

2013년 1월 현지 내 국제여행사들이 판매한 주요 북한 여행 상품은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문일정과 주요 목적지, 교통수단, 여행비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방문일정은 △ 1박 2일 △ 3박 4일 △ 4박 5일 △ 6박 7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목적지는 △ 나진·선봉 △ 평양, 묘향산 △ 평양, 금강산 △ 금강산 △ 칠보산 등 5곳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수단이 달라지는데, 변경관광일 때에는 차량, 기차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며, 일반관광일 때에는 비행기, 선박, 차량이 주요 수단으로 이용된다. 상품비용은 목적지와 교통수단, 여행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변경지역을 방문하는 상품은 일반 여행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상품비용은 약 800~2,300위안이다. 일반 여행은 비행기와 유람선을 이용하는 상품으로 구성되며, 비용은 약 4,000~6,500위안이다. 북한 여행은 다른 나라 여행과는 달리 여행객들의 방문지역과 구매상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현지에서 추가로 지출하는 경비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별 구매편차도 크지 않다. 일반적으로 중국 관광객 1인이 북한 여행에서 추가로 지출하는 경비는 약 500~1000위안이며, 주요 항목은 북한 기사·가이드 팁, 온천, 공연관람, 안궁환⁵³⁾ 구매 등이다.⁵⁴⁾

53) 안궁환은 우리나라의 우황청심환과 유사한 의약품이며, 비용은 1개당 700위안 정도이다.

54)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2013. 6. 3~8).

표 3-6. 연지에서 출발하는 주요 북한 여행상품(2013년 1월 기준*)

구분	지역	주요 일정	교통 수단	숙박 정보**	기본상품 비용(RMB)		기타 주의사항
					포함 사항	선택사항 (1인당 추가경비)	
1박 2일	나진, 선봉	첫날: 나진 도찰, 시내관광 둘째 날: 시내관광, 귀국	관광 버스, 자가용	3성 호텔 (나진시)	800~1,000위안/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입 금지품목: 휴대전화, 라디오, 무선호출기, 망원경, MP4, 간행물, CD, 테이프 - 외화 반입 규정: 2,000위안, 미화 6,000달러 이상 소지, 반입 금지 - 위약금: 출발 전날 까지 여행비의 40%, 출발일 100%
					식사, 차량, 호텔(2~3인실), 관광지 입장료, 가이드 비용	물개공연(100위안), 유람선(80위안), 마사지(100위안), 해물요리(50~80위안), 특별 연회(30위안), 쇼핑(외국어서점, 우표상점, 해산물상점)	
3박 4일	평양, 묘향산	첫날: 평양 도찰, 시내관광 둘째 날: 묘향산 셋째 날: 개성, 판문점, 평양 넷째 날: 귀국	비행기, 관광 버스	평양: 고려 호텔 또는 양각도 호텔 (5성급)	3,980~4,180위안/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도구 준비 - 지정장소에서만 사진촬영. 위반 시 5,000위안/인 벌금 - 반입, 휴대 금지 품목: 상기 내용 참고 - 2만 위안 이상 반입 금지
					항공권, 비자, 식사, 호텔, 버스, 입장료, 보험, 가이드	북한 가이드, 기사 팀(20위안)(단 북한가이드는 북한말로 안내 예정), 기타 개인경비(예. 쇼핑: 안공환 700위안/개)	
3박 4일	평양, 금강산	첫날: 평양, 금강산 도착 둘째 날: 금강산 관광 셋째 날: 평양 관광 넷째 날: 귀국	비행기, 관광 버스	금강산: 외금강 호텔 (4성급) 평양: 고려 호텔 또는 양각도 호텔(5성급)	3,980~4,400위안/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수, 도박 금지 - 자연재해 발생 시 배상 없이 취소 가능 - 취소규정: 수속기간 중 위약금 없음, 출발 3일 전 1,000위안, 출발 전날 1,500위안, 당일 환급금 없음.
					항공권, 비자, 식사, 호텔, 버스, 입장료, 보험, 가이드	북한 가이드, 기사 팀(20위안), 기타 개인경비	

표 3-6. 계속

구분	지역	주요 일정	교통 수단	숙박 정보**	기본상품 비용(RMB)		기타 주의사항
					포함 사항	선택사항 (1인당 추가경비)	
4박 5일	평양, 묘향산	첫날: 평양 도착, 시내관광 둘째 날: 개성, 판문점 셋째 날: 묘향산(버스) 넷째 날: 남포, 서해갑문 다섯째 날: 귀국	비행기, 관광버스	고려호텔 또는 양각도 호텔(5성급)	4,780~4,980위안/인		북한 가이드, 기사 탑(20위안), 기타 개인경비
		항공권, 비자, 식사, 호텔, 버스, 입장료, 보험, 가이드					
		4,780~5,000위안/인					
4박 5일	평양, 금강산	첫날: 평양 도착, 원산에서 저녁식사, 금강산 이동 둘째 날: 금강산 관광, 온천 셋째 날: 평양 관광 넷째 날: 개성, 판문점 관광 다섯째 날: 귀국	비행기, 관광버스	금강산: 외금강 호텔 (4성급) 평양: 고려 또는 양각도 호텔(5성급)	4,780~5,000위안/인		온천(100위안), 기사 및 가이드 탑(20위안), 기타 개인경비 등
		비행기 표, 숙박, 식사, 비자발급비 (200위안/인), 차량, 여행 보험					
		4,780~5,000위안/인					
4박 5일	금강산	첫날: 나선 관광 둘째, 셋째 날: 금강산 관광 넷째 날: 나선 관광 다섯째 날: 귀국	관광버스, 선박 (유람선)	황성유람선 (나선항, 고성항 정박)	3,880~4,880위안/인		유람선(80위안), 온천(100위안), 기사 및 가이드 탑(20위안), 기타 개인경비 등
		선박비, 차량, 숙박, 식사, 보험, 가이드					
		3,880~4,880위안/인					

표 3-6. 계속

구분	지역	주요 일정	교통 수단	숙박 정보**	기본상품 비용(RMB)		기타 주의사항
					포함 사항	선택사항 (1인당 추가경비)	
4박 5일	칠보 산	첫날: 남양 도착 둘째, 셋째 날: 칠보산 관광 넷째 날: 경성, 청진 관광 다섯째 날: 귀국 (투먼시 여행사와 협력)	기차, 관광 버스	민속촌, 민박 또는 칠보산 호텔 (3성급)	2,100~2,300위안/인		- 통행증 이용 - 반입 금지품목 라선지역(1박2일)과 동일 - 6,000위안 이상 반입 금지 - 위약금: 출국 6~10일 전 400위안, 4~5일 전 여행비 70%, 1~3일 전 85%, 당일 90%
					기차, 차량, 숙박, 식사, 보험, 가이드	해수욕장 입장료 (20위안), 유람선 탑승료(30위안), 해산물요리, 함북 예술단 공연(100위안), 온천(30위안), 기타 개인경비	
6박 7일	평양, 금강산	첫날: 나선 관광 둘째, 셋째 날: 금강산 관광 넷째 날: 평양 관광 다섯째 날: 개성, 판문점 여섯째 날: 평양 관광 일곱째 날: 귀국	-출국: 관광 버스, 선박 (유람선), -입국: 비행기	황성유람선 외금강 호텔 고려 호텔/양각도 호텔	5,500~6,500위안/인		3박4일 주의사항과 동일
					선박비, 차량, 숙박, 식사, 보험, 가이드	온천, 기사 및 가이드 팁, 기타 개인경비 등	

주: * 2013년 여행사들이 준비한 여행상품 판매자료. 그러나 해당 자료들은 중국정부의 대북 관광 금지조치로 인해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 북한의 숙박시설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도 열악하다. 북한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생필품을 준비해가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칠보산과 같은 일부 지역 방문객들에게는 숙소부족으로 민박을 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호텔 역시 5성급은 평양과 금강산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객실상황 역시 부족하여 1실 2~4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관광객이 추가 비용을 지급할 경우 1인 1실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비수기에만 허용된다.

자료: 중국 현지 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김지연(2013), pp. 7~8.

훈춘과 투먼에서 출발하는 주요 북한 관광상품은 무박, 1박 2일, 3박 4일, 4박 5일 일정으로 구성되며, 모든 상품이 변경관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춘에서 출발하는 주요 상품은 [표 3-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을 이용한 1박 2일 일정의 나진, 선봉 관광이다. 해당 상품의 기본비용은 800~1,000위안이며, 관광객들의 숙박은 현지 출발 상품과 동일하게 나선시내 3성급 호텔에서 이루어진다. 투먼에서 출발하는 상품의 주요 관광지는 남양·온성과 칠보산이며, 비용은 방문지역과 교통수단에 따라 달라지며 약 700~2,500위안이다.

표 3-7. 훈춘과 투먼에서 출발하는 주요 북한 여행상품(2013년 1월 기준*)

출발지	구분	지역	주요 일정 (주요 방문지)	교통 수단	숙박 정보	기본상품 비용(RMB)		기타 주의사항
						포함사항	선택사항 (1인당 추가경비)	
훈춘	1박 2일	나진 선봉	나진, 선봉	관광 버스, 자가용	3성 호텔 (나진 시)	800~1,000위안/인		- 반입 금지 품목: 휴대전화, 라디오, 무선 호출기, 망원경, MP4, 간행물 등 - 외화 반입 규정: 2,000위안, 미화 6,000달러 이상 반입 금지
						식사, 차량, 호텔, 입장료, 통행증, 보험 가이드 비용	물개공연(100위안), 유람선(80위안), 마사지(100위안), 해물 요리(50~80위안), 특별연회(30위안), 북한 가이드·기사 팁, 개인경비	
투먼	1일	남양, 온성	남양, 온성지역 관광	버스	-	700~800위안/인		- 통행증으로 관광 가능 - 만가 투숙 시 샤워시설 없음.
						식사, 차량 가이드, 보험, 통행증 발급	개인경비	

표 3-7. 계속

출발지	구분	지역	주요 일정 (주요 방문지)	교통 수단	숙박 정보	기본상품 비용(RMB)		기타 주의사항
						포함사항	선택사항 (1인당 추가경비)	
투먼	3박 4일	칠보산	첫날: 회령, 청진 관광 둘째 날: 칠보산 관광 셋째 날: 칠보산, 경성 관광 넷째 날: 귀국	버스	민속촌, 경성 호텔 *민가에 투숙 가능	1,680~2,000위안/인		반입 금지품목 나선지역 (1박 2일)과 동일 6,000위안 이상 반입 금지 - 위약금: 출국 6~10일 전 취소 시 500위안/인, 4~5일 전 여행 경비의 70%, 1~3일 전 85%
	4박 5일		첫날: 남양도착 둘째, 셋째 날: 칠보산 관광 넷째 날: 경성, 청진 관광 다섯째 날: 귀국			기차	1,950~2,450위안/인	
						기차, 차량 숙박, 식사 보험, 통행증 가이드	해수욕장 입장료(20위안), 유람선 탑승료(30위안), 해산물 요리, 예술단 공연(100위안), 온천(30위안), 가이드·기사 팁, 개인경비	
						기차, 차량 숙박, 식사 보험, 통행증 가이드	해수욕장 입장료(20위안), 유람선 탑승료(30위안), 해산물 요리, 예술단 공연 (100위안), 온천(30위안), 가이드·기사 팁, 개인경비	

주: * 2013년 여행사들이 준비한 여행상품 판매자료. 그러나 해당 자료들은 중국정부의 대북 관광 금지조치로 인해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자료: 중국 현지 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김지연(2013), p. 8.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선양과 단둥에 소재한 국제여행사들이 판매한 주요 대북 여행상품은 무박, 3박 4일, 4박 5일 일정으로 신의주, 평양·묘향산 코스이다. 선양에서 출발하는 주요 대북 여행상품은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가 비행기를 이용한 평양·묘향산 관광이며, 주요 숙박시설은 5성급의 양각도호텔 또는 고려호텔이다. 여행사들은 평양의 5성급 호텔에 투숙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세면도구를 준비하도록 권장하

고 있으며, 여행비용은 약 3,900~5,100위안이다. 단둥에서 출발하는 주요 여행상품은 차량을 이용해 무박으로 신의주를 관광하는 상품과 기차를 이용해 평양과 묘향산을 여행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단둥은 선양과 같이 고려항공 직항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관계로 차량이나 기차를 이용한 상품이 주로 취급된다. 상품가격은 방문지역과 일정, 이동수단에 따라 달라지며, 범위는 약 800~4,000위안이다.

표 3-8. 선양과 단둥에서 출발하는 주요 북한 여행상품(2013년 3월 기준*)

출발지	구분	지역	주요 일정 (주요 방문지)	교통 수단	숙박 정보	기본상품 비용(RMB)		기타 주의사항
						포함사항	선택사항 (1인당 추가비용)	
선양	3박 4일	평양, 묘향산	첫날: 평양 이동, 시내 관광 둘째 날: 묘향산 관광 셋째 날: 개성, 관문점 관광 넷째 날: 귀국	비행기	양각도 또는 고려호텔	3,900~4,100위안/인	북한 가이드·기사 팀(40~80위안), 상해보험(30위안), 아리랑공연(800위안, 8~10월)	세면도구 준비 - 비상식량은 권장사항 - 금지품목: 휴대전화, 망원경, 노트북, 한글서적·의복 등
	4박 5일		첫날: 평양 이동, 시내 관광 둘째 날: 묘향산 관광 셋째 날: 개성, 관문점 관광 넷째 날: 남포, 평양 관광 다섯째 날: 귀국			4,600~5,100위안/인	북한 가이드·기사 팀(40~80위안), 상해보험(30위안), 아리랑공연(800위안, 8~10월)	- 신분증 원본 소지 - 지정된 장소 이외 사진촬영 금지 - 외화 반입의 최고 한도 없음. 6,000위안, 5,000달러 이하 소지 권장
단둥	1일	신의주	신의주 관광	버스	-	780~880위안/인	차량, 식사 보험, 입장료 가이드, 통행증발급 북한 가이드·기사 팀(10위안), 개인경비	- 최소 인원 모집 실패 시 출발일 변경 가능.

표 3-8. 계속

출발지	구분	지역	주요 일정 (주요 방문지)	교통 수단	숙박 정보	기본상품 비용(RMB)		기타 주의사항
						포함사항	선택사항 (1인당 추가경비)	
단 등	3박 4일	평양, 묘향산	첫날: 평양 이동, 시내 관광 둘째 날: 묘향산 관광 셋째 날: 개성, 관문점 관광 넷째 날: 귀국	기차	양각도 또는 고려 호텔	2,750~3,000위안/인		- 위약금: 4일 전 300위안, 하루 전~당일 1,000위 안 * 둘째~셋째 날 일 정 교체 가능
	4박 5일		첫날: 평양 이동, 시내 관광 둘째 날: 묘향산 관광 셋째 날: 개성, 관문점 관광 넷째 날: 남포, 평양 관광 다섯째 날: 귀국			3,800~4,000위안/인		
						기차, 숙박 비자, 차량 가이드, 보험 입장료	북한 가이드, 기사 탑(40~80 위안), 상해보 험(30위안), 아 리랑공연(800위 안, 8~10월)	
						기차, 숙박 비자, 차량 가이드, 보험 입장료	북한 가이드, 기사 탑(40~80 위안), 상해보 험(30위안), 아 리랑공연(800위 안, 8~10월)	

주: * 2013년 여행사들이 준비한 여행상품 판매자료. 그러나 해당 자료들은 중국정부의 대북 관광 금지조치로 인해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자료: 중국 현지 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김지연(2013), p. 9.

베이징에 소재한 국제여행사들이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취급한 주요 북한 여행상품은 평양·묘향산 한 가지 상품이다. 다만 이동수단은 비행기와 기차로 구분되며, 비행기를 이용한 상품만 베이징에서 직접 출발하며 기차를 이용한 일정은 단등에 위치한 국제여행사들과 연합하여 진행된다.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은 3박 4일과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기차를 이용한 상품은 5박 6일과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기차를 이용한 상품은 비행기를 이용한 상품과 비교해 1,000위안/인 정도 저렴하나 실제 주요 방문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비행기 일정으로 진행하면 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기차를 통한 관광상품은 단둥을 거쳐 가기 때문에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전체 일정은 이동시간으로 인해 비행기 상품에 비해 길어진다. 평양과 주변지역을 관광하는 경우, 관광객들은 북한 내 부족하고 열악한 관광인프라 시설로 인해 평양에 위치한 호텔에서 숙박을 한다.

표 3-9.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주요 북한 여행상품(2013년 1월 기준*)

구분	지역	주요 일정	교통 수단	숙박 정보	기본상품 비용(RMB)		기타 주의사항
					포함사항	선택사항 (1인당 추가경비)	
3박 4일	평양, 묘향 산	첫날: 평양 이동, 시내 관광 둘째 날: 묘향산 관광 셋째 날: 개성, 관문점 관광 넷째 날: 귀국	비행기	양각 도 또는 고려 호텔	4,300~4,680위안/인		- 비자 필요 - 반입 금지품목: 휴대전화, 라디 오, 무선호출 기, 망원경, MP4, 간행물, CD, 테이프
					비행기, 숙박, 비자 차량, 보험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북한 가이드·기사 팀(80 위안), 상해보험(30 위안), 아리랑 공연 (800위안, 8~10월)	
4박 5일	평양, 묘향 산	첫날: 평양 이동, 시내 관광 둘째 날: 묘향산 관광 셋째 날: 남포, 평양관광 넷째 날: 개성, 관문점 관광 다섯째 날: 귀국	비행기	양각 도 또는 고려 호텔	4,800~5,280위안/인		- 위약금: 7일 전 환불 500위안, 5일 전 환불 1,000위안, 3일 전 2,000위안, 당일 취소 여 행지 전액 위 약금 발생
					비행기, 숙박, 비자 차량, 보험 입장료, 가이드	북한 가이드·기사 팀(100위안), 상해보 험(30위안), 아리랑 공연(800위안), 서커 스(100위안), 기타 개인경비	

표 3-9. 계속

구분	지역	주요 일정	교통 수단	숙박 정보	기본상품 비용(RMB)		기타 주의사항
					포함사항	선택사항(1인당 추가경비)	
5박 6일	평양, 묘향산	첫날: 단둥 도착 둘째 날: 평양 도착 셋째 날: 평양, 개성 관광 넷째 날: 묘향산 관광 다섯째 날: 단둥 도착 여섯째 날: 베이징 도착	기차	평양 내 호텔	3,380~3,880위안/인		- 언론관계자 입국 금지 - 개별 행동 금지 - 위안화 사용 가능
					기차, 숙박비자, 차량보험, 입장료 가이드	북한 가이드·기사팀(80위안), 군사관 리비(200위안), 주체 사상탑 등탑(50위안), 기념 CD(200위안/장), 상해보험(30위안), 아리랑공연(800위안), 서커스(100위안), 기타 개인경비	
6박 7일		첫날: 단둥 도착 둘째 날: 평양 도착 셋째 날: 평양, 개성 관광 넷째 날: 묘향산 관광 다섯째 날: 남포, 평양 관광 여섯째, 일곱째 날: 귀국			3,900~4,400위안/인		
					기차, 숙박비자, 차량보험, 입장료 가이드	북한 가이드·기사팀(80위안), 군사관 리비(200위안), 주체 사상탑 등탑(50위안), 기념 CD(200위안/장), 상해보험(30위안), 아리랑 공연(800위안), 서커스(100위안), 기타 개인경비	

주: * 2013년 여행사들이 준비한 여행상품 판매자료. 해당 자료들은 중국정부의 대북 관광 금지 조치로 인해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자료: 중국 현지 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김지연(2013), p. 10.

4. 대북 여행에 참가한 중국 관광객 수 및 특성

2012년 주요 도시를 거쳐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만~6만 명으로 추산된다. 해당 수치는 전수조사를 통해 추산되었으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국 내 대북 여행업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과 보도 자료들이 모두 활용되었다. 2012년 대북 여행에 참가한 중국 관광객 수는 연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에서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고 북한상품을 판매하는 국제여행사 및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여유국 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내용, 기관들의 내부자료, 제한적으로 보도된 언론자료가 모두 함께 활용되어 추산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중국 관광객 규모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추산되었다. 이는 교통수단에 따라 최소 출발인원 규모가 달라지며, 이를 근거로 여행사들의 모객활동 형태가 연합 또는 개별로 달라지는 상황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 추산한 일부 지역의 수치는 기사를 통해 보도된 수치와 비교할 때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는 연변지역을 통해 출국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연간 1만 명 가량이며, 단둥을 통해 출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연간 2만 명 가량으로 보도되었다.⁵⁵⁾ 이러한 보도는 기초조사 성격을 갖고 있는 본 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자료로 활용되며, 보고서에서 추산된 수치의 신뢰성을 일정 부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2012년도 북한을 여행한 대북 관광객 정보를 출발도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도 연지를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은 약 1만 6,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비행기를 이용해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

55) 『연합뉴스』(2013. 4. 16), 『중국, 자국민 북한 단체관광 일주일째 중단』;
『연합뉴스』(2013. 5. 16), 『중국 연변 여행사들도 북한 관광 접수 재개』;
『연합뉴스』(2013. 6. 03), 『중국 여행사들 “북한 관광 재개됐지만 반응 시들”』;
『연합뉴스』(2013. 6. 16), 『중국, 훈춘에 출입국사무소 설립...북한 관광 확대』.

객 수는 [표 3-10]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약 1,8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여행사들이 최소 출발인원인 80명의 관광객을 7월부터 9월 초까지 11주간 매주 2회씩 꾸준히 출국시킨다는 전제하에 추산된 수치이다. 2012년 북한 여행은 일반적으로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29주간 진행되었으나, 이 기간에 진행되었던 주요 상품은 기차나 차량을 이용한 상품이었다. 비행기를 이용한 평양 관광은 성수기로 구분되는 7월부터 9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수기 기간을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상품의 관광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릴 때에는 약 130석의 모든 좌석이 만석이 되나, 성수기의 모든 기간이 만석은 아니다. 또한 최소 인원이 모집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최소 출발인원을 기준인원으로 채택하여 관광객 규모를 추산하였다.

표 3-10. 2012년 현지에서 비행기로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 추정

산출근거	80명 * 2회/주 * 11주 = 1,760명
세부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양 관광이 중심. 여행사들의 연합상품. 2) 최소 출발인원은 약 80명이며, 고려항공 이용(요금 2,300~2,700위안/인) 3) 북한 여행은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되나 비행기를 이용한 내륙관광은 7월부터 9월 초에 집중 진행됨(성수기 기간은 2012년 기준으로 11주). 4) 관광객이 많을 때는 만석이나 성수기 전 기간이 만석인 것은 아니며, 최소 인원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광일정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최소 출발인원을 기준인원으로 적용함.

자료: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김지연(2013)에서 재인용. p. 10.

한편 2012년 현지에서 차량을 이용해 변경관광에 참여한 중국 관광객 수는 [표 3-11]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약 1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한 개의 국제여행사가 1회에 모집한 20명의 관광객을 1주에 3회씩 29주간 출경시키되 동일한 기준으로 8개의 여행사가 출경시킨 여행객 수를 모두 곱한 수치이다. 차량을 이용한 북한 여행은 변경여행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며, 이 경우 국제여행사들은 최소 출발인원이 모객될 경우 단독상품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여행사들이 일반적으로 지정한 최소 출발인원은 16~18명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여행사들은 최소 인원의 10~20% 정도의 관광객을 국내여행사들로부터 소개받으며, 이는 국제여행사가 지정한 최소 인원 규모에 추가되는 수치로 계산된다. 특히 성수기에는 관광객이 대거 몰린 반면, 비수기에는 최소 출발인원이 모집되지 않아 일정이 취소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여행사들의 최소 인원에서 추가로 소개받는 인원이 고려된 20명을 여행사 1개의 1회 평균 출경인원으로 기준하였다.

표 3-11. 2012년 현지에서 차량으로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 추정

산출근거	20명 * 3회/주 * 29주 * 8개 여행사 = 13,920명
세부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적으로 국제여행사들은 단독으로 진행하며, 국내여행사들은 모객 후 일정의 소개비(10% 내외)를 받고 관광객들을 국제여행사에 소개함. 만일 국제여행사가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국제여행사와 연합하여 행사 진행. 2) 변경관광은 날씨 및 계절 영향으로 4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진행(2012년 기준: 29주) 3) 여행사별 최소 출발인원은 16~18명임. 국제여행사들은 대부분 직접 모객활동을 진행. 간혹 타 여행사들로부터 관광객을 인도받는 사례도 발생(10~20%). 따라서 최소 출발인원의 1.1~1.2배(20명)를 기준인원으로 책정.

자료: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김지연(2013)에서 재인용. p. 11.

2012년 훈춘과 투먼을 통해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춘에서 차량으로 변경지역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2012년 약 8,100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주요 관광지역은 나진선봉이며, 관광은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표 3-12. 2012년 훈춘에서 차량으로 북한 여행을 다녀온 중국 관광객 수 추정

산출근거	70명 * 29주 * 4개 여행사 = 8,120명
세부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진선봉이 중심 관광지 2) 16~18명이 최소 출발인원. 성수기와 비수기 간의 출국인원에 차이 발생. 1년간 출국한 전체 관광객 수를 고려할 때 평균 60~80명/월이 출국. 결과 중간값을 기준인원으로 적용. 3) 관광기간을 2012년 4월 말~2012년 11월 초까지 29주로 적용 4) 출국권한을 갖고 훈춘시에서 북한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국제여행사는 4개

자료: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김지연 (2013)에서 재인용. p. 11.

2012년 두먼에서 기차를 이용해 북한 여행을 다녀온 중국 관광객 수는 [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주요 관광지는 칠보산이었으며, 관광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는 7월부터 9월 초까지였다.

표 3-13. 2012년 두먼에서 기차로 북한 여행을 다녀온 중국 관광객 수 추정

산출근거	150명 * 11주 * 1개 여행사= 1,650명
세부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칠보산 관광을 중심으로 진행. 칠보산 상품 출국권은 두먼시두먼강국제 여행사만 보유. 모객활동은 모든 여행사가 가능. 단 출국과 칠보산에서의 여행객 인솔업무는 두먼강여행사만 가능. 2) 관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7월부터 9월초까지임(2012년 기준 11주) 3) 성수기에 여행사가 보내는 관광객 수는 평균 140~160명/회이며, 따라서 150명을 1회 평균값으로 책정함.

자료: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김지연 (2013)에서 재인용. p. 11.

2012년도 선양과 단둥을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만 4,000명에서 3만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2012년 선양에서 비행기를 통해 북한 여행을 다녀온 중국 관광객 수는 약 4,000명으로 조사되며, 단둥에서 기차를 이용해 북한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만~3만 명으로 조사된다. 단둥에서 출발하는 무

박의 신의주 여행상품은 찾는 여행객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제외하였다. 그 결과 선양, 단둥에서 출발한 중국 여행객 수는 비행기와 기차 이용객을 중심으로 추산하였다.⁵⁶⁾

2012년 베이징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여행한 중국 여행객 수는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베이징을 통해 북한을 여행하는 상품은 크게 비행기와 기차를 이용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기차는 단둥에 있는 국제여행사들과 연합하여 진행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상품만 갖고 여행객 수를 추산하였다.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대북 관광 여행객 수는 다른 지역에서 출발하는 중국 관광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북한을 여행하는 관광객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장년, 노년층이며, 이들의 주요 방문목적이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을 회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소득수준이 높은 여행객들에게 북한은 여행 선호 국가로는 인식되기 어렵다.

표 3-14. 2012년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 추정

산출근거	30명/달 * 7개월 * 9개 여행사 = 1,890명
세부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행기로 평양, 주변지역에 대한 관광상품이 중심. 기차의 경우 단둥을 경우. 이로 인해 기차상품은 단둥 내 국제여행사들과 연계되어 진행. 결과 베이징 출발은 비행기로 북한을 여행하는 관광객 수를 중심으로 추산 2) 최소 인원 확보를 위해 여행시간 연합으로 여행객 모집. 월(月)평균 북한 여행으로 1개의 국제여행사에 모집되는 관광객 수는 약 30명임. 3) 관광기간은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약 7개월로 한정 4) 베이징에 소재한 국제여행사 중 북한상품을 판매하는 국제여행사는 약 9개

자료: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김지연 (2013)에서 재인용. p. 12.

56) 한국관광공사 선양지사 관계자 및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인터뷰(2013. 6).

5. 소결: 북·중 관광협력의 주요 특징

북·중 관광협력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북·중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외교적 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양국간 고위급인사 교류는 2년간 중단되었으며, 이와 함께 양국간 관광협력도 함께 중단되었다. 2008년 시진핑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양국의 고위급인사 교류는 재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북한이 2001년부터 요구한대로 북한을 관광목적지로 지정하였다. 또한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되었던 2009년에는 양국간 관광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되었다. 반면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김도준 관광총국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 해 4월 중국인의 안전문제를 원인으로 대북 관광을 중단하였다. 중국정부는 현재까지 북·중 관광협력을 재개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북·중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외교관계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 즉 북한과 중국의 정치·외교관계가 우호적이며 강화될 때 양국간의 관광협력도 주요한 변화를 보이며 활기를 띠는 반면, 반대의 상황에서는 관광협력이 침체되거나 단절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북·중 관광협력의 성격은 시혜(施惠)에서 호혜(互惠)로 변화되고 있다. 과거 북·중 경제협력은 동맹국간 서로 통용한다는 사회주의 이념과 혈맹관계(血盟關係)라는 양국간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인식 속에 중국의 일방적인 지원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관계는 점차 상호 이익이라는 형태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양국간 관광협력에서도 적용되어왔다. 실제 2006년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인들의 도박 문제가 심화되자, 중국정부는 단호히 중국인들의 대북 관광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결정은 북한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으나 중국정부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불건전한 오락문화가 확산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대북 여행 금지조치를 취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관광협력을 동북3성 개발이라는 자국의 경제개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동해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 내 연관된 지역의 인프라 시설을 개보수, 구축해 주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 전역의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동해출로 확보와 연계된 주요 지역의 인프라 시설만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양국간 인적 교류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와 함께 업무, 여행 등 다양한 목적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즉 중국의 대북 인프라 구축 지원은 자국의 필요가 반영된 처사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과 유사하게, 북한 역시 외화를 확보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한다는 목표하에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 관광협력은 상호 이익이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북·중 관광협력이 각 국가의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관광산업에서 최고 협력국가로 자리매김해 있는 반면, 북한은 중국의 관광산업에서 제한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非)인기 여행국가로 인식, 평가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⁵⁷⁾인 반면, 중국을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북한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을 기준으로 0.04% 미만이다.⁵⁸⁾ 특히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장년층, 노년층으로 조사되었는

57) 최철호(2011), pp. 79~90.

58)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을 여행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11,62만 9,000명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해 중국을 여행한 북한 관광객 수는 4,500명으로 조사되었다. 國家旅遊局, 2012年 1-12月入境旅遊外國人人數(按目的分).

데, 이는 중국 관광객들의 대북 관광이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⁵⁹⁾ 중국의 젊은 관광객들은 북한의 △ 열악한 관광인프라 시설과 △ 수많은 제약요인, 이로 인한 불편함과 행동의 제약들 △ 차별화된 관광상품의 부재 등 상존하는 다양한 대북 관광의 한계들로 인해 북한 여행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⁶⁰⁾ 중국 관광산업에서 북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사실은 북한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와 주요 도시에 소재한 국제여행사 가운데 북한상품을 취급하는 국제여행사 비중을 살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전체 도시 가운데 출국업무를 포함해 북한 여행을 직접 추진하는 도시는 베이징과 선양, 단둥, 옌지, 훈춘, 투먼, 창춘, 상하이 등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일부 도시로 제한된다. 이들은 모두 북한과의 직항노선이 개설되어 있거나 국경을 마주하는 변경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주요 도시에서 출국권한을 갖고 북한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의 개수를 확인하는 작업도 양국간 관광협력의 불균형을 확인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북한 관광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린성의 경우에도 47개 국제여행사 중 약 36~50%만이 북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베이징의 경우 전체 국제여행사의 3.2%만이 북한 여행을 취급하고 있다.⁶¹⁾ 이와 같은 불균형은 양국간 관광협력에 대한 인식차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광협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틀에서 추진되는 것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북·중 관광협력은 제한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중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북한의 관광지는 북한당국이 지정한 관광개방지역에 한정된다.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은 중국의 전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반면, 북한은 북한이 지정해놓은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여행이

59)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면담결과(2013. 6. 3~8).

60)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면담결과(2013. 6. 3~8).

61)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면담결과(2013. 6. 3~8).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두 나라의 서로 다른 발전태도로 기인한다. 시장경제 도입과 함께 중국은 관광산업을 경제발전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관광분야에서도 개혁개방을 시도한 반면, 북한은 관광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주의 틀 안에서 해당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제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여행하는 북한 관광객들은 중국정부의 통제가 아닌 북한 당국에 의해 목적지가 결정되는 반면,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북한정부가 지정한 관광지역에 한해 여행할 수 있다. 또한 북·중 관광협력의 여행 상품과 일정, 교통수단, 숙박장소 등의 주요 선택사항은 변화 없이 동일한 상품이 반복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의 관광지는 신의주, 나진·선봉, 평양, 묘향산, 금강산, 개성 등 북한당국이 지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기존 관광지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등의 특별한 변화는 크게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지정된 관광지만 중국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 관광객에게 개방되고 있다. 그 개방의 폭도 완전 개방이 아닌 북한 안내원과 중국 안내원이 안내하는 지역만 방문하는 제한된 수준이다. 북·중 관광협력에서는 관광지역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에서도 차별화된 상품이 빈약한 상황이다. 즉 차별화된 상품이 소개되거나 판매되기보다는 기존 상품이 반복적으로 판매, 소개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평양·묘향산을 여행하는 경우 주요 방문지역은 평양, 묘향산, 개성 등이며, 이러한 방문지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 없이 동일하다. 또한 비행기를 이용한 4박 5일의 방문지와 기차를 이용한 5박 6일의 방문지가 평양·묘향산, 개성으로 동일하다. 비행기를 이용해 동일한 평양·묘향산 지역을 3박 4일과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경우에서도 하루가 추가된 일정에 대해서는 평양 인근의 남포가 추가될 뿐 추가된 하루에 대해 차별화된 여행상품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한된 관광협력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관광협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외화 수입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각종 제도적 정비 등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북·중 관광협력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대변해주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관광협력에 따른 외화 수입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북한의 중국 관광객 유치에 따른 외화 수입규모를 추정해보았으며, 특히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주요 남·북 경제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북·중 관광협력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해보고자 하였다.

1.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추정

북한이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인 여행객을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약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는 관광객 수와 평균 여행상품 금액, 북한이 중국 국제여행사들로부터 취하는 비율을 모두 곱한 후 여기서 나온 금액(1)과 1명의 관광객이 북한에서 추가로 지출하는 평균 경비와 전체 관광객 수를 곱한 비용(2)을 모두 합한 방식(1+2)으로 추산되었다.⁶²⁾ 이러한 추산방식은 북한의 특수한 환경요인에 따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 관광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크게 없다. 이는 북한 관광이 양국 정부가 허가한 특정 여행사를 통해서만 진행되고, 대부분이 단체여행이며, 관광객의 모든 일정과 방문지역이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지출하는 품목 역시 특정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객 수와 평균지출액을 이용한 북한의 외화 수입 추정은 상당 부분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평균 여행상품가격은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추산되었다. 교통수단이 기준이 된 주요 원인은 여행상품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같은 목적일 경우 일정이 1~2일 차이가 나더라도 비행기로 이동하는 경비가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기차, 버스 순으로 여행비용이 책정된다. 따라서 상품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교통수단이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교통수단이 추산 기준으로 선정된 또 다른 이유는 여행사들이 최소 출발인원을 기준으로 여행일정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 최소 출발인원 수는 교통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하여 교통수단이 추산근거로 선정되었다. 여행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의 외화 수입은 최소와 최대 규모로 구분하여 추정되었다.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62) 외화 수입 추정방식 = (인원 수 * 평균 여행상품가격 * 북한이 중국 국제여행사들로부터 취하는 비율) + (중국 관광객 1인당 평균 추가지출 비용 * 전체 인원 수)

북한이 2012년 엔지에서 출발한 중국 여행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 규모는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809만~3,221만 위안 또는 약 457~524만 달러로 추산된다.⁶³⁾ 이는 평양과 주변지역을 비행기로 이동하는 경우의 최소, 최대 외화 수입과 차량을 이용해 나진, 선봉을 방문할 때의 최소, 최대 외화 수입을 합산한 추정치이다. 엔지에서 출발하는 칠보산 상품의 경우 투먼시투먼강여행사와 연합으로 진행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엔지사례에서는 제외시켰다. 또한 호화 유람선을 이용하여 금강산을 여행하는 상품의 경우 이를 찾는 관광객 수가 미미하여 산출과정에서는 제외시켰다. 따라서 북한이 엔지에서 출발하는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평양과 금강산, 평양과 묘향산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과 나진·선봉 관광객을 통해 취하는 수입, 이들이 북한에서 평균 지출하는 추가비용을 모두 합산하는 형태로 추산하였다. [표 3-10]을 보면, 2012년 엔지에서 비행기를 통해 북한을 여행한 관광객 수는 약 1,760명이며, 이들이 평양상품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적게는 약 4,000위안, 많게는 5,000위안 정도이다. 또한 관광객이 지불하는 상품가격에서 여행사들의 공통적인 수수료 수준은 약 8~13%이며, 이를 제외한 금액이 모두 북한으로 유입된다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의 중간값인 10%를 여행사 수수료로 책정하고, 남은 90%를 북한의 외화 수입 평균치로 설정하였다. 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나진·선봉 관광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여행사별로 상품가격에 차이가 있으나 그 범위가 800~1,000위안이기 때문에 이를 각각 최소, 최대 가격으로 선정하였다.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1인당 평균 500~1,000위안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지출항목으로는 △북한 가이드, 기사 수고비, △추가로 방문하는 유원지 입장료나 공연 관람비용, 유람선 탑승비용, 온천비용 등의 추가 경비, △인공환(청

63) 환율: 1USD = 6.15RMB(2013. 6. 28 기준).

심환)을 포함한 개인쇼핑경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을 갖고 북한이 엔지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2,809만~3,221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하면 약 457만~524만 달러로 추산된다.

표 4-1. 엔지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추정

(단위: RMB)

이동수단	추산범위	산출근거
비행기	최소	1,760명 * 3,980위안 * 0.9 = 6,304,320
	최대	1,760명 * 5,000위안 * 0.9 = 7,920,000
차량	최소	13,920명 * 800위안 * 0.9 = 10,022,400
	최대	13,920명 * 1,000위안 * 0.9 = 12,528,000
추가경비		(1760 + 13,920명) * 750 위안 = 11,760,000
소계(a)	RMB 기준	28,086,720 ~ 32,208,000
	USD 기준	457만~524만 달러

- 주: 1) 외화 수입 = (인원 수 * 평균 상품가격 * 북한이 여행사 경비에서 취하는 비율) + (인원 수 * 중국 관광객 1인당 추가지출비용)
 2) 인원 수 및 최소, 최대 추산범위 기준은 앞장의 내용 참고
 3) 관광비용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비용은 전체 경비의 약 90%. 이외 남은 10%는 여행사로 유입
 4) 여행시간의 상품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입규모를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으로 구분해 추산
 5) 중국인 여행자들이 북한 관광에서 추가로 지출하는 경비는 1인당 평균 500~1,000위안으로 파악. 주요 지출내역은 북한 가이드, 기사 팀(100위안/인), 안궁환(청심환 700위안/개), 추가입장료(200위안/인, 예: 온천, 물개소, 기타 공연 등), 기타 개인경비(쇼핑) 등으로 요약 가능. 종합하여 북한 여행에서 중국인 여행자 1인이 추가로 소비하는 비용은 평균값인 750위안으로 기준. 소비가 북한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100% 북한 수입으로 간주
 6) 엔지에서 출발한 여행상품 중 차량·유람선 상품 및 차량·비행기를 연계한 상품은 거의 판매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여 비행기, 차량을 이용한 상품만 추산
 7) 1USD = 6.15RMB(2013. 6. 28 기준)
 자료: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김지연(2013), p. 12.

훈춘과 두먼에서 출발한 중국인 여행객을 통해 2012년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은 대략 1,494만~1,827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하면 약 243만~298만 달러로 추산된다.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훈춘과 투먼에서 판매되는 주요 여행상품은 크게 차량을 이용하여 나진·선봉을 여행하는 상품과 기차를 이용한 칠보산 여행 두 가지로 구분된다. 훈춘에서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 수는 [표 3-12]에서 추정된 것과 같이 8,120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변경관광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1인당 상품가격이 약 700~1,000위안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한편 2012년 기차로 칠보산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1,650명으로 추산되며, 이의 상품가격은 1인당 1,680~2,450위안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북한에서 중국 관광객이 추가로 지출하는 경비는 지역별, 상품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

표 4-2. 훈춘, 투먼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을 통한 북한 외화 수입규모 추정

(단위: RMB)

이동수단	추산범위	산출근거
차량	최소	$8,120\text{명} * 700\text{위안} * 0.9 = 5,115,600$
	최대	$8,120\text{명} * 1,000\text{위안} * 0.9 = 7,308,000$
기차	최소	$1,650\text{명} * 1,680\text{위안} * 0.9 = 2,494,800$
	최대	$1,650\text{명} * 2,450\text{위안} * 0.9 = 3,638,250$
추가경비		$(8,120 + 1,650\text{명}) * 750\text{위안} = 7,327,500$
소계(b)	RMB 기준	14,937,900 ~ 18,273,750
	USD 기준	243만~298만 달러

주: 1) 외화 수입 = (인원 수 * 평균 상품가격 * 북한이 여행사 경비에서 취하는 비율) + (인원 수 * 중국 관광객 1인당 추가 지출비용)

2) 인원 수 및 최소, 최대 추산범위 기준은 앞장의 내용 참고

3) 여행사가 여행경비에서 취하는 비용은 전체의 약 10% 수준. 차액은 북한으로 유입.

4) 여행시간의 상품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입규모를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으로 구분해 추산

5) 중국인 여행자들이 북한 관광에서 추가로 지출하는 경비는 1인당 평균 500~1,000위안으로 파악. 주요 지출내역은 북한 가이드, 기사 팀(100위안/인), 안궁환(청심환 700위안/개), 추가입장료(200위안/인, 예: 온천, 물개쇼, 기타 공연 등), 기타 개인경비(소peng) 등으로 요약 가능. 종합하여 북한 여행에서 중국인 여행자 1인이 추가로 소비하는 비용은 평균값인 750위안으로 기준. 소비가 북한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100% 북한수입으로 간주

6) 1USD = 6.15RMB(2013. 6. 28 기준)

자료: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김지연(2013), p.12.

이는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지정된 지역만 여행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종류도 한정되어 있고, 이외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입장료나 관람료 등의 추가비용도 예상된 수준에서만 지출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여행사에 지급한 상품가격 이외에 여행 중에 개인이 크게 지출할 부분이 없으며, 또한 추가지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관광객들간에 편차를 발생시킬 품목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국 관광객이 북한 관광에서 상품비용 외에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1인당 500~1,000위안이며, 그 중간수치를 추가 지출비용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산출근거를 종합하여 합산한 결과 훈춘, 두먼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2012년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243만~298만 달러로 추산된다.

선양과 단둥을 거쳐 2012년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모두 2만 4,000~3만 4,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은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8,154만~1억 5,186만 위안으로 추산된다. 이를 미화로 환산하면 약 1,327만~2,471만 달러이다. 선양에서 출발하는 대북 관광상품은 비행기를 이용한 일반관광이 주요 여행상품이며, 단둥에서 출발하는 대북 관광은 기차를 이용한 일반관광이 주요 여행상품이다. 단둥에서 출발하는 상품 가운데 차량을 이용해 신의주 지역을 여행하는 상품도 존재하나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 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단둥에서 출발하는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은 기차를 통한 일반여행에 근거해 추산하였다. 2012년 선양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이 약 4,000명이고, 이들이 여행사에 지급한 여행상품가격이 약 3,900~5,100위안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관광객들이 지급한 추가경비가 1인당 약 750위안이라는 조건하에 북한이 선양, 단둥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은 약 1,327만~2,471만 달러로 추산된다.

표 4-3. 선양, 단둥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을 통한 북한 외화 수입규모 추정

(단위: RMB)

이동수단	추산범위	산출근거
비행기	최소	4,000명 * 3,900위안 * 0.9 = 14,040,000
	최대	4,000명 * 5,100위안 * 0.9 = 18,360,000
기차	최소	20,000명 * 2,750위안 = 49,500,000
	최대	30,000명 * 4,000위안 = 108,000,000
추가경비	최소	(4,000 + 20,000명) * 750위안 = 18,000,000
	최대	(4,000 + 30,000명) * 750위안 = 25,500,000
소계(c)	RMB 기준	81,540,000 ~ 151,860,000
	USD 기준	1,327만~2,471만 달러

- 주: 1) 외화 수입 = (인원 수 * 평균 상품가격 * 북한이 여행사 경비에서 취하는 비율) + (인원 수 * 중국 관광객 1인당 추가 지출비용)
 2) 인원 수 및 최소, 최대 추산범위 기준은 앞장의 내용 참고
 3) 관광비용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비용은 전체 경비의 약 90%. 이외 남은 10%는 여행사로 유입
 4) 여행사간의 상품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입규모를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으로 구분해 추산
 5) 중국인 여행자들이 북한 관광에서 추가로 지출하는 경비는 1인당 평균 500~1,000위안으로 파악. 주요 지출내역은 북한 가이드, 기사 팀(100위안/인), 안궁환(청심환 700위안/개), 추가입장료(200위안/인, 예: 온천, 물개쇼, 기타 공연 등), 기타 개인경비(쇼핑 등)로 요약 가능. 종합하여 북한 여행에서 중국인 여행자 1인이 추가로 소비하는 비용은 평균값인 750위안으로 기준. 소비가 북한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100% 북한수입으로 간주
 6) 선양, 단둥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변경관광은 극소수로 진행. 결과, 주력상품인 비행기, 기차를 통한 여행상품을 주요 수입원으로 기준. 적용
 7) 1USD = 6.15RMB(2013. 6. 28 기준)

자료: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김지현(2013), p. 13.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주요 북한 여행상품은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양·묘향산 관광이며, 2012년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들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873만~1,040만 위안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화를 기준으로 할 때 142~169만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북한 여행상품은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하여 평양과 주변지역을 여행하는 일반여행상품이 대부분이다. 이때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관광객들은 베이징공항에서 고려항공을 이용해 북한에 직접 들어가는 반면, 기차를 이용할 경우 관광객들은 단둥을 거쳐 단둥에 있는 국

제여행사에 소개되어 일정이 진행된다. 따라서 단등에서 출발하는 여행객 수와 중복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베이징출발은 비행기 이용관광객으로 한정해 북한의 외화규모를 추산하였다.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2012년 북한 여행에 참가한 중국 관광객은 모두 1,890명으로 조사되며, 이들이 여행사에 지급한 여행비용은 1인당 약 4,300~5,280위안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이 여행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경비역시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1인당 약 750위안으로 조사되었다. 일련의 산출근거를 종합할 때, 북한이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통해 2012년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142만~169만 달러로 추산된다.

표 4-4.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을 통한 북한 외화 수입규모 추정

(단위: RMB)

이동수단	추산범위	산출근거
비행기	최소	1,890명 * 4,300위안 * 0.9 = 7,314,300
	최대	1,890명 * 5,280위안 * 0.9 = 8,981,280
추가경비		1,890명 * 750위안 = 1,417,500
소계(d)	RMB 기준	8,731,800 ~ 10,398,780
	USD 기준	142만~169만 달러

- 주: 1) 외화 수입 = (인원 수 * 평균 상품가격 * 북한이 여행사 경비에서 취하는 비율) + (인원 수 * 중국 관광객 1인당 추가 지출비용)
 2) 인원 수 및 최소, 최대 추산범위 기준은 앞장의 내용 참고
 3) 관광비용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비용은 전체 경비의 약 90%. 이외 남은 10%는 여행사로 유입
 4) 여행시간의 상품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입규모를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으로 구분해 추산
 5) 중국인 여행자들이 북한 관광에서 추가로 지출하는 경비는 1인당 평균 500~1,000위안으로 파악. 주요 지출내역은 북한 가이드, 기사 팀(100위안/인), 안궁환(청심환 700위안/개), 추가입장료(200위안/인, 예: 온천, 물개쇼, 기타 공연 등), 기타 개인경비(쇼핑) 등으로 요약 가능. 종합하여 북한 여행에서 중국인 여행자 1인이 추가로 소비하는 비용은 평균값인 750위안으로 기준. 소비가 북한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100% 북한수입으로 간주
 6) 베이징에서 기차로 출발하는 여행상품은 단등에서 출발하는 기차상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징의 경우 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수입만 추산.
 7) 1USD = 6.15RMB(2013. 6. 28 기준)

자료: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김지연(2013), p. 13.

종합하면, 2012년도 북한이 엔지와 훈춘, 투먼, 선양과 단둥,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인 여행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할 시 그 규모는 약 2,169~3,462만 달러로 추산된다.

표 4-5. 2012년 중국 관광객을 통한 북한 외화 수입규모 추정: 주요 도시 출발 기준

산출근거	합계	
	단위. RMB	단위. USD
a+b+c+d	133,296,420~212,740,530	2,169~3,462만 달러

주: 1USD = 6.15RMB(2013. 6. 28 기준)

자료: 위에서 추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저자가 도표화.

2. 남·북 경협사업과 북·중 관광협력 간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북한의 공식적인 외화 수입원은 크게 무역·투자, 남·북 경협, 인력 송출, 관광협력으로 구분된다. 이 중 무역·투자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그 활동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국가도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로 편중되고 있다. 남·북 경협 역시 5.24조치 이후 거의 중단된 상황이며, 인력 송출 역시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관광협력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작용하여 왔다. 중국이 북한의 주요 관광협력국가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관광협력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남·북 경제협력사업들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외화규모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는 대북 정책 및 사업에 관여하는 우리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우리 측 정책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가. 개성공단사업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이 북한과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2년 11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해 6월 1단계 개발착공식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공단개발이 진행되었다. 2004년 4월 통일부가 1단계 100만 평 협력사업을 승인한 이후 2달 후인 그해 6월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생산되었다. 2005년 9월, 23개 입주기업과 1개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8개의 기업이 1,491만 달러의 생산액을 달성하였다. 2007년 5월 우리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다음 달 6월, 183개의 우리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12월 개성공단 내 가동기업 수는 2005년에 비해 3.6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생산액 역시 12.4배 성장하였다. 개성공단 가동기업들의 생산액은 2013년 3월 북한의 통행차단조치가 있기 전까지 매년 증가되었으며,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수도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되었다.

표 4-6. 개성공단 가동기업 수와 생산액, 북한 근로자 현황

(단위: 개, 만 달러,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2월)	계
가동 기업 수	18	30	65	93	117	121	123	123	123	-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8,056	205,655
북한 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448	53,448	-

자료: 통일부(2013b), 개성공단 통계자료.

2012년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8,600만 달러이며, 이는 대부분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급여형태로 전달되었다.⁶⁴⁾ 북한이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통해 확보한 외화규모는 4,3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남과 북이 합의한 1인당 최저임금 기준 67달러를 전체 5만 3,448명의 근로자들에게 1년간 지급했다는 조건에서 추산된 수치이다.⁶⁵⁾ 북한은 근로자들의 기본급여 외에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기본급여의 15% 비용을 입주기업들로부터 추가 징수한다.⁶⁶⁾ 기본급여가 67달러라는 전제하에 사회보험료를 계산하면, 이 비용은 1인당 약 10달러로 계산되며, 이를 전체 근로자들의 수로 곱하면 총액은 약 642만 달러로 계산된다.

기본급여와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우리 기업이 북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주요 비용은 각종 수당과 노력알선료이다. 주요 수당에는 가급금과 장려금, 상금 등이 포함된다. 북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1주에 48시간이며 규정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기업들은 북한에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무를 요청하거나 주 48시간을 초과한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임금의 100%를 가산한 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북한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업은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기업은 북한 근로자들을 소개받는 대가로 노력알선기관에 북한 근로자 1인당 17달러의 노동력알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기업은 해고나 사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충원 시에는 노력알선료를 면제받기 때문에 실제 노력알선료 형태로 북한에 전달되는 외화규모는 급여수준과 비교할 때 많지 않다.

64) 통일부(2013b), 「개성공단사업 통계자료」.

65) 통일부(2013b).

66) 통일부(2008), 「개성공단 Q&A」.

이외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추가로 북한에 지급하는 비용에는 각종 세금이 있다. 주요 세금에는 소득세와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도시경영세, 지방세 등이 있다. 그러나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 제도에 존재하는 다양한 면제제도 및 감면제도로 인해 각종 세금형태로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규모는 근로자 급여액과 비교해 낮다.

표 4-7.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와 내용

구분	납세자	과세 기준	세율	감면제도
기업 소득세	입주기업 중 소득을 얻은 기업	결산이윤	14% 일반업 종	- 장려, 생산부문 투자: 15년 이상 운영 한 기업은 이윤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은 50% 감면 - 서비스부문 투자: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은 이윤 발생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이후 1년간은 50% 감면
			10% 장려업 종*	- 이윤 채투자: 3년 이상 운영할 경우 채투자한 분량의 기업소득세 70%를 다음 해 세금에서 감면
개인 소득세	소득을 얻은 개인	월 보수액 에서 30% 공제한 금 액 500달 러 이상일 경우	4~20%	- 남·북당국 협정에 의한 소득 면제 - 북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 예금이자, 보험금 또는 소득 면제 - 공업자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 들 예금의 이자소득 면제
재산세	공단 내 영구건물 소유자	건물용도 별 취득 시 현지 가격	0.1~ 1%	신규건물 소유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면제
상속세	공단 내 상속받은 자	세금규정 에서 지출 을 공제한 금액 실속 재산액	6~25%	-
거래세	생산부문 기업	생산물 중 류별 판매 수익금	1~25%	생산제품을 한국 혹은 다른 나라에 수 출할 경우 면제

표 4-7. 계속

구분	납세자	과세기준	세율	감면제도
영업세	서비스부문 기업	부문별 수익 금과 건설물 인도 수익금	1~7%	하부구조부문 기업 면제: 전 기, 가스, 용수, 도로, 상하수 도 등
지 방 세	도시경영세	월 노임총액 또는 수입총액		-
	자동차 이용세	자동차를 소유한 기업 또는 개인	자동차 종류	3~60 달러 60일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미사용기간 면제

주: * 경공업, 하부구조, 첨단과학 등.
자료: 통일부(2008), 「개성공단 Q&A」, p. 42.

2012년도 북한이 연지와 훈춘, 투먼, 선양과 단둥,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가 약 2,169만~3,462만 달러로 추산될 때, 이 비용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의 약 25.2~40.3% 수준으로 분석된다.

표 4-8. 북한이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 추정치와 개성공단으로부터 벌어들인 외화 수입규모 비교

구분	추산금액 및 비중
북한이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인 외화 수입규모 추산치(A)	2,169만~3,462만 달러(USD)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규모(B)	8,600만 달러(USD)
A/B*100%	25.2~40.3%

주: * 2012년도 기준
자료: 필자가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도표화.

나. 금강산, 개성 관광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1) 금강산 관광협력과 북·중 관광협력의 비교분석

남·북한 간 금강산 관광협력사업은 1998년 11월 금강호가 출항하면

서 해로를 통해 처음 시작되었다. 금강호가 출항하기 전 남과 북은 합의와 조율의 과정을 거쳤다. 1989년 1월 현대그룹 故정주영 회장은 방북과정에서 북한과 금강산 남·북 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1998년 2월 남북은 금강산 관광 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해 10월 장전항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그 다음 달인 11월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출항하였다. 그러나 1999년 6월 우리 측 관광객이 억류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은 잠정 중단되었다. 이를 계기로 현대이산과 북한은 관광세칙과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었다. 2002년 11월 금강산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03년 2월에는 육로관광이 시작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사업 초기 관광지역 내 관광객들이 머물 호텔, 숙박시설이 부재했던 이유로 유람선에서 숙박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유람선을 이용한 금강산 여행상품과 매우 유사하다. 사업 초기 우리 측 금강산 관광사업은 속초항에서 출발한 우리 유람선이 장전항에 정착하고, 이후 관광객들이 소형 선박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한 후 관광을 마치면 유람선으로 돌아와 숙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유람선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은 겨울철 관광객 수 급감과 누적된 사업 적자를 원인으로 2004년 1월 중단되었다. 금강산 육로관광은 2003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해로관광이 중단된 이후 금강산 관광은 육로관광을 통해서만 진행되었다. 육로관광이 진행된 이후, 2004년 7월 금강산 관광은 당일 관광과 1박 2일 상품이 소개되었다. 2008년 3월에는 승용차관광이 실시되었으나, 같은 해 7월 故)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 간 금강산 관광협력사업은 중단되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의 주요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이는 크게 주요 일정, 상품비용, 우리 측 관광객 수,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외화규모 등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금강산 관광일정은 크게 당일 상품과 1박 2일 상품, 2박 3일 상품

으로 구분되며, 요금은 약 12만 원부터 53만 원까지 다양하다.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강산 관광의 주요 방문지역은 구룡연과 만물상, 삼일포 코스이며, 요금은 숙박 여부 및 숙박시설, 식사 선택, 공연 관람 및 온천과 같은 기타 선택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 여행에서 휴대할 수 없는 품목은 중국 관광객의 대북 여행 시 제시되는 품목과 유사하다.

표 4-9. 금강산 관광일정, 여행요금 및 금지품목

일정	주요 방문지	요금 (2007년 기준)	금지품목
무박	구룡연 또는 만물상 코스, 삼일포 코스 또는 온천	12만 ~15만 원	- 쌍안경, 망원경, 망원렌즈가 달 린 사진기
1박2일	첫날: 구룡연 코스, 교예 공연, 가무극 등 둘째 날: 만물상 또는 삼 일포, 해금강 코스	25만~40만 원	- 상표나 설명서 없는 약품과 상품 - 인쇄물, 그림, 글자판, 녹화테이프 - 위조지폐, 독약, 마약, 유독성 화학물질
2박3일	첫날: 금강산 관광특구 또는 온천 둘째 날: 구룡연 코스, 삼 일포 또는 쇼핑 셋째 날: 만물상 또는 삼 일포, 해금강 코스	33만~53만 원	- 무기, 방사성물질, 인화물질 - 무전기화 그 부속품 -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 기타 관광에 적합하지 않는 물건

주: 요금은 숙박장소 및 관광객의 선택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료: 현대아산(2013b), 「금강산 관광」.

둘째, 금강산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196만 명의 우리 관광객이 금강산을 여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지급된 비용은 최소 4억 9,000만 달러였다.⁶⁷⁾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강산 관광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는 2007년이다. 이 시기 금강산 여행을 다녀온 우리 여행객 수는 약 35만 명이며,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에 지급된 비용은 약 2,000만 달러로 조사된다.

67) 현대아산(2013b), 「금강산 관광」; 현대아산 관계자 인터뷰(2013. 7).

표 4-10. 금강산 관광객 수 및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에 지급한 비용

(단위: 명, 미화 백만 달러)

연도 구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7월)	합계
관광객 수	158,003	212,020	58,833	87,414	77,683	272,820	301,822	238,497	348,263	200,596	1,955,951
지급 금액	206.0	136.0	37	21.5	13.1	15.3	13.5	12.3	20.4	11.4	486.7

자료: 현대아산(2013b).

금강산 관광사업과 북·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일부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 추정치는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강산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7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과 비교할 때 약 1.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4-11. 금강산 관광과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비교

(단위: 미화 만 달러, 배)

2007년 금강산 관광을 통한 외화규모(A)	2012년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외화규모(B)	비중(B/A)
2,040만 달러	2,169만~3,462만 달러(USD)	1.1~1.7배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도표화.

2) 개성 관광협력과 북·중 관광협력의 비교분석

남·북한 간의 개성 관광협력은 금강산 관광협력에 이어 2005년에 시작되었다. 2005년 7월 현대아산은 북한과 개성 관광 합의를 체결하였고, 다음 달 8월 세 차례에 걸쳐 개성 시범관광을 실시하였다. 남·북은 2007년 11월 개성 관광의 연내 실시를 합의하였으며, 다음 달 12월부터 본 관광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개성 관광 역시 중단되었다.

개성 관광사업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비해 단기간만 진행되었으며, 사

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진행되었던 주요 협력내용은 일정과 상품비용, 우리 측 관광객 수, 개성 관광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외화규모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성 관광은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일 여행상품만 존재하며, 주요 방문지역은 선죽교, 고려박물관, 박연폭포, 개성공업지구 등이다. 성인 관광객 1인을 기준으로 책정된 개성 관광비용은 2007년 기준으로 18만 원이었으며, 여기에는 식사비용과 안내원비용, 교통비, 입국 및 출국 비용, 여행자보험, 입장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4-12. 개성 관광 일정, 여행요금 및 금지품목

일정	주요 방문지	요금(2007년 기준)	금지품목
무박	선죽교, 고려박물관, 박연폭포, 개성공업지구 등	18만 원	금강산 관광에서 제시한 금지품목과 동일

자료: 현대아산(2013a), 「개성관광」.

둘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개성을 여행한 우리 관광객 수는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1만 명이며, 2008년 개성 관광을 통해 북한이 확보한 외화규모는 1,600만 달러로 조사된다. 짧은 기간이지만 개성 관광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는 관광이 중단된 2008년이며, 같은 해 개성 관광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외화규모는 1,600만 달러 이상으로 조사된다.

표 4-13. 개성 관광객 수 및 개성 관광을 통해 북한에 지급한 비용

(단위: 명, 미화 백만 달러)

연도	2005	2006	2007	2008	합계
구분					
관광객 수	1,484	-	7,427	103,122	112,033
지급금액	-	-	-	16	-

자료: 통일부(2013b).

개성 관광사업과 북·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연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추정치는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성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8년의 외화 수입과 비교할 때 약 1.4~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4-14. 개성 관광과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비교
(단위: 미화 만 달러, 배)

2008년 개성관광을 통한 외화규모(A)	2012년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외화규모(B)	비중(B/A)
1,600만 달러	2,169만~3,462만 달러(USD)	1.4~2.2배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도표화.

주요 특징과 전망

본 연구에서는 북·중 관광협력의 실태와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 양국의 관광협력 추진 배경, 관련 법률 및 행정기구 현황, 최근 관광협력의 주요 현황 및 특징, 또한 이에 따른 외화수입 추정규모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각 장별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북·중 간 관광협력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중 관광협력은 중국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최근에는 상호 이익 도모라는 측면으로 변화되었다. 물론 양측의 정치관계에 의한 부침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최근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정책적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도 외화확보의 주요 수단이자 인프라 건설 지원과의 연계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최근 관광협력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은 남북 관광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 및 관광객 유치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금강산법의 경우 외국인투자유치법과 합영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한국의 역할을 여타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북·중관광은 상호왕래보다는 중국관광객의 북한 방문에 치중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전체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중국인의 비중은 80%에 이르는 반면, 반대로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북한관광객의 비중은 0.04% 미만에 불과하다.

넷째, 북한의 관광개방지역 및 프로그램 제한, 열악한 관광인프라, 기타 여러 가지 활동제약요인 등으로 인하여 중국인들의 북한관광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의 관광가능지역은 북한당국이 지정한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어있으며, 관광 프로그램 또한 거의 변화되지 않고 있다.

실제 노년층을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관광수요가 존재하나, 특히 젊은 관광객들에게는 대북관광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북중관광에 따른 북한의 외화수입규모는 개성공단의 25~40% 수준으로 추정되나, 금강산관광보다는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이 중국관광객 유치에 따라 벌어들인 외화는 대략 2,100만~3,400만 달러의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금강산관광에 따른 외화수입의 1.1~1.7배 수준이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對북한 관광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요인들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들의 북한 여행 동기는 대부분 전쟁이나 계획경제 시절을 회고하는 추억 여행이므로 노년층이 감소하면 이러한 여행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젊은 층으로서는 북한이라는 폐쇄사회 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북한 여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수요는 대규모 여행단을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로서 북한의 여행 인프라 및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여행객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좀 더 쉬운 관광지가 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처럼 제한된 교통수단과 복잡한 규제절차를 유지하는 한 북한 여행 수요 발달에 제한이 클 것이다. 물론 북한은 국경 검문소를 확대하고, 통행증 및 비자 발급 절차

를 간소화하는 등 일련의 노력해왔다. 그러나 관광지 자체를 새로 개발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정치외교적으로 대외 정책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소폭의 개선이 근본적인 수요 창출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셋째, 중국측 여행사들은 낮은 마진율로 인해 적극적으로 북한 여행을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다. 즉, 여행 채널이 다원화되고 개발될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여행 수요 자체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對북한 여행 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 북한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이제 막 생겨나는 중이라는 점도 중국의 對북한 여행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즉, 여행 채널이 어떻게 증가하느냐에 따라 여행객 자체가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관련주제에 대해서 거의 처음으로 수행된 종합적인 조사 사례라는 측면에서, 우선은 북·중 관광협력의 전반적인 여건 및 실태를 조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북한내 관광산업 기반여건 및 관광수요 등과 관련하여 향후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보다 체계화된 조사를 통해 심도있는 실태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면, 추후 남북한간 관광협력계획의 수립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내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에게 북한관광상품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애로점, 특정 관심 이슈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북한내 특정 관광지역에 대한 별도의 심층적인 자료조사 및 설문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국문자료

- 김지연. 2013. 「북·중 관광협력 실태분석과 전망」. 『지역경제포커스』, 제7권 41호.
- 김철원. 2007.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통일부 통일교육원.
- 박기홍·김대관. 200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 잠재력과 장애요인」. 통일연구원.
- 신용석·김현주. 2012.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국 비자제도 개선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승현. 2009. 『두만강지역의 신개발 전략과 환동해권 확대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조명철·김지연. 2010. 「GI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 관광지구법. 2002. 11. 13.
- _____. 2003. 4. 2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2011. 5. 3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광규정. 2012. 6. 2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 1978. 4. 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2002. 9. 1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1992. 10. 5.
- _____. 2011. 11. 2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1996. 7. 1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시행세칙. 1992. 10. 1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1984.
- _____. 2011. 11. 2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1992. 10. 5.
- 최철호. 2011. 「북중 관광 협력의 현황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10호, pp. 79~90. 한국개발원.
- 코트라. 2007. 「해외경제속보: 中, 황금연휴(黃金周) 휴가 제도 계속 된다」.
- 통일부. 2008. 「개성공단 Q&A」.
- _____. 2013a. 「2013 북한 주요 기관·단체 인명록」.
- _____. 2013b. 「개성공단사업 통계자료」.

한국관광공사. 2011. 「2011 북한 관광백서」.

_____. 2013. 내부자료.

현대아산. 2013a. 「개성관광」.

_____. 2013b. 「금강산 관광」.

• 외국문자료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0.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 NY: UN & UNWTO.

Zhang, H. 2009.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hinese Northeast region". *New Prospects for Regional-Leve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East Sea Rim*, pp. 291-300, Seminar Proceeding 09-04, Gangwon Province & Gangwon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2010. 「关于开展中国旅游团队赴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旅游业务的通知」. 『旅国际发』, 5号.

• 온라인 자료

인민일보. 「베이징시 여유국, 여유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http://www.re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검색일: 2011. 5. 23).

중국국가관광국 서울지국. 「관광국 안내: 국가관광국」. <http://www.visitchina.or.kr/07/01/>(검색일: 2013. 7. 8).

한국관광공사. 2005. 「관광자료실: 북한의 관광산업 현황 및 관광특구 확대 가능성」. p. 3에서 재인용. 인용자료: <http://kto.visitkorea.or.kr/kor/biz/north/data/bookda/board/view.kto?id=294708&isNotice=false&instanceId=73&rnum=17> (검색일: 2013. 5. 24).

_____. 2012. 「관광통계」. 북한 관광정보: 북한 관광 개황. 인용 자료 <http://kto.visitkorea.or.kr/kor/biz/north/tour/st/board/view.kto?id=293355&isNotice=false&instanceId=136&rnum=11>(검색일: 2013. 5. 24).

国家旅游局公布最新边境游旅行社资质名单. 2012. Retrieved on June 25, 2013 from <http://go.huanqiu.com/news/2012-10/3193931.html>(검색일: 2013. 6. 20).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Authorized Travel Agencies for Outbound Travel By Chinese Citizens. Retrieved on 2013,6,21. from <http://en.cnta>,

gov.cn/TravelInChina/Forms/TravelInChina/TravelAgencies.aspx?Area=TianJin
 旅行社条例实施细则. 2009. Retrieved on 2013. 7. 09. from http://www.legaldaily.com.cn/0801/2009-04/30/content_1084842.htm(검색일: 2013. 5. 24).
 中國國家旅遊局. 2013. 「2012年 1-12月入境旅游外国人人数(按目的分)」.
 Retrieved on 2013. 7. 8. from <http://www.cnta.gov.cn/html/2013-1/013-1-17-17-13-54943.html>(검색일: 2013. 5. 24).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2010. 边境旅游暂行管理办法. <http://www.cnta.gov.cn/html/2010-12/2010-12-15-15-13-44723.html>(검색일: 2013. 6. 20).

• **언론 보도자료**

문화관광체육부. 2012. 「한중 공정관광 협력 및 중국 서부 관광시장 활성화」. 공감
 코리아 뉴스(12. 12).
 『연합뉴스』. 「만포~지안 국경다리 건설 北이 주도」(2012. 7. 27).
 _____. 「중국, 두만강에 북한 연결 교량 속속 추진가속화」(2013. 2. 28).
 _____. 「중국 엔벤 여행사들도 북한 관광 접수 재개」(2013. 5. 16).
 _____. 「중국 여행사들 “북한 관광 재개됐지만 반응 시들”」(2013. 6. 3).
 _____. 「중국, 자국민 북한 단체관광 일주일째 중단」(2013. 4. 16).
 _____. 「중국 지린성, 대북 교통인프라 확충 추진」(2013. 3. 27).
 _____. 「중국, 훈춘에 출입국사무소 설립...북한 관광 확대」(2013. 6. 16).
 _____. 「中, 北 나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가속화」(2012. 9. 20).
 _____. 『北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 여행업계 ‘시큰둥’』(2013. 7. 12).
 _____. 「베이징시 여유국, 여유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2011. 5. 23).

• **현지 조사자료**

중국 여유국 관계자 면담내용(2013. 6. 3~8).
 중국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3~8).
 중국 현지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2013. 6. 3~8).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들의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3~8).
 한국관광공사 선양지사 관계자 및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인터뷰(2013. 6).
 현대아산 관계자 인터뷰(2013. 7).

부록. 금강산 관광지구법·특구법 주요 변화내용

2002. 11. 13		2003. 4. 24		2011. 5. 31		특징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1	금강산 관광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용하는 국제적인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금강산 관광지구법은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서 체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금강산의 자연생태 관광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서 체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서 체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2002년 법과 2003년 법 모두 금강산의 국제적인 관광지구로의 지위를 명시.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시작. 2011년: 금강산 관광지구가 국제관광지구를 명시하고 이 법이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 데 연계된 법률임을 명시. 2003년 구법 1~2조항 수정 보충
2	금강산 관광지구에서의 관광은 남측 및 해외동포들이 한다. 외국인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다.	2	국제관광특구는 관광 및 그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별 관광 지구이다. 국제관광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 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2	국제관광특구는 관광 및 그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별 관광 지구이다. 국제관광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 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2002년 2003년: 관광객의 주요 대상을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규정 2011년: 금강산 특구의 지역 명시, 특구 내에서의 활동범위 명시. 구법 1조 수정 보충
3	관광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를 인식하고 등산과 해수욕 휴양으로 건강을 증진하며 금강산을 유람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세계의 명산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꾸리는 것은 우리의 정책이다. 꾸리는 금강산을 여러 가지 관광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지로 꾸리고 관광을 적극 발전시켜야 하도록 한다.	3	세계의 명산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꾸리는 것은 우리의 정책이다. 꾸리는 금강산을 여러 가지 관광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지로 꾸리고 관광을 적극 발전시켜야 하도록 한다.	2002년, 2003년: 금강산 관광방법에 대해 소개 2011년: 북한당국의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에 대한 의지 및 입장 표명. 신설 조항.

부록. 계속

2002. 11. 13	2003. 4. 24		2011. 5. 31		특징
	내용	조항	내용	조항	
4	관광지구에서 관광과 관광업 그밖의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국제관광투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 국가는 국제관광투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자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4	2002년, 2003년: 동 법 및 관련 규정이 관광관련 활동규정임을 명시.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기능 소개 2011년: 금강산 관광투구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 명시(한국인/기업 포함. 한국인/기업과의 협력의지 반영). 북한당국의 관광투구에 대한 투자 장려 입장 명시(관광사업을 지속하라는 북한의 강한 의지와 태도 반영). 구법 7-8조항 수정 보충.
5	관광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광지구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는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과 합병적으로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5	2002년, 2003년: 관광사업 관리기관으로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 및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명시 2011년: 투자자들의 재산보호원칙을 신설. 신설 조항.

부록. 계속

2002. 11. 13		2003. 4. 24		2011. 5. 31		특징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6	<p>중영관광지구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지구관리관 사업에 대한 지도 2. 관광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3. 대상권역의 4. 관광지구 범규의 시행세칙 작성 5. 관광지구관리관이 요구하는 물자와 기념상품의 보장 6. 관광지구의 세무관리 7.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p>	6	<p>중영관광지구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지구관리관 사업에 대한 지도 2. 관광지구 범규의 시행세칙 작성 3. 대상권역의 4. 관광지구관리관이 요구하는 물자와 기념상품의 보장 5. 관광지구의 세무관리 6.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업</p>	6	<p>국제관광특구의 관리는 중영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한다.</p>	<p>2002년, 2003년: 중영관광지구지도기관의 임무에 대한 설명 제시. 단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의 임무 축소 및 약화(예: 2002년 2조 및 3조 삭제, 2003년 3조가 과거 합의수준에서 접수보관 수준으로 권한 및 임무의 약화) 2011년: 국제관광특구 관리 담당자 명시. 구범 5조 수정 보충.</p>
7	<p>관광지구 개발은 개발업자가 한다. 관광지구 관리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의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p>	7	<p>국가는 국제관광특구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관광지구, 다른 나라 관광조작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p>	7	<p>2002년, 2003년: 관광지구 개발주체(개발업자)에 대한 설명 명시 2011년: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조항 신설. 다른 나라와의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려는 복합의 의지 태도변화 반영. 신설 조항.</p>	

부록. 계속

조항	2002. 11. 13		2003. 4. 24		2011. 5. 31		특징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조항		
8	개발업자는 중앙관광지도기관이 정한 기간까지 관광지구 개발과 관광사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 개발과 영업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업자의 관광지구개발 총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관광지구 개발 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9	국재관광특구지도는 국재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운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중앙지도기관이다.	8	국재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관광 및 관광업, 기타 경제활동은 이 법과 이 법 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에 따라 한다.	2002년, 2003년: 개발업자의 사업기한 및 사업권한(양도, 임대권한 포함) 설명 2011년: 관광법규 적용 명시. 구법 4조 수정 보충.
9	개발업자는 승인된 관광지구 개발 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업자는 승인된 관광지구 개발 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재관광특구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국재관광특구관리위원회 사업에 대한 지도/국재관광특구법규의 시행세칙 작성/국재관광특구 개발 총계획의 심의, 승인/대상건설 설계문건사본의 접수 보관/국재관광특구의 세무관리/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10	2002년, 2003년: 개발업자의 관광지구 개발 총계획 및 제출의무,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양도, 임대)의무 2011년: 국재관광특구 지도기관의 지위. 기존의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을 국재관광특구 지도기관으로 명칭 및 조직 변경. 구법 12조 수정 보충	2002년, 2003년: 개발업자의 관광지구 개발 총계획 및 제출의무,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양도, 임대)의무 2011년: 국재관광특구 지도기관의 지위. 기존의 중앙관광특구 지도기관을 국재관광특구 지도기관으로 명칭 및 조직 변경. 구법 12조 수정 보충
10	개발업자는 승인된 관광지구 개발 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업자는 승인된 관광지구 개발 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재관광특구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국재관광특구관리위원회 사업에 대한 지도/국재관광특구법규의 시행세칙 작성/국재관광특구 개발 총계획의 심의, 승인/대상건설 설계문건사본의 접수 보관/국재관광특구의 세무관리/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10	2002년, 2003년: 개발계획 변경처리과정 2011년: 국재관광특구 지도기관의 임무와 권한. 기존의 제6조 수정 보충. 구법 6조 수정 보충.	2002년, 2003년: 개발계획 변경처리과정 2011년: 국재관광특구 지도기관의 임무와 권한. 기존의 제6조 수정 보충. 구법 6조 수정 보충.

부록. 계속

조항	2002. 11. 13		2003. 4. 24		2011. 5. 31		특징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11	개발업자는 관광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숲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이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 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 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시설물을 건설하지 않으며 정해진 오염물질의 배출 기준, 소음, 진동 기준 같은 환경보호 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발업자는 관광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숲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이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 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 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시설물을 건설하지 않으며 정해진 오염물질의 배출 기준, 소음, 진동 기준 같은 환경보호 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11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관광특구를 관리하는 현지 집행기관이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책임자는 위임장이다.	2002년, 2003년: 개발과정에서 개발업자가 유의할 사항. 금지된 건물시설물 건설지역, 보장되어야 할 환경보호 기준 제시 2011년: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지위 명시. 2003년 구법 제12조 수정 보충	
12	관광지구의 관리는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의 지도 밑에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으로 관광지구관리기관을 구성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으로 관광지구관리기관을 구성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으로 관광지구관리기관을 구성한다.	12	관광지구의 관리의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의 지도 밑에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한다. 관광지구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으로 관광지구관리기관을 구성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으로 관광지구관리기관을 구성한다.	12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국제관광특구 개발 총계획의 작성 및 실행/관광객 유치, 개발, 관리/관광 선전과 관광객 모집, 관광조직/국제관광특구에서의 질서 유지, 인신 및 재산 보호/토지, 건물, 임대/투자 유치와 기업의 창설 승인, 등록, 영입하기/토지이용권, 건물, 물건거래의 등록/기업 활동에 필요한 로력보장/건설허가와 준공검사/국제관광특구하부구조시설물의 관리/국제관광특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인원, 운수단의 출입과 물자반출입에 대한 협조/박에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위임한 사업	2002년, 2003년: 관광지구관리기관 명시, 관광지구관리기관 성원의 자격/구성 요건 명시 2011년: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2003년 구법 제3조 수정 보충	

부록. 계속

조항	2002. 11. 13		2003. 4. 24		2011. 5. 31		특징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조항	
15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광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관 팡지구지도기관은 관광 환경과 조건 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관광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에 출입하는 인원, 동식물과 수생수단은 통행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 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안전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검역사업을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15	15	2002년, 2003년: 중앙관광지도기관의 관광환경 및 조건 보장에 대한 의무 명시 2011년: 검사검역에 대한 조항. 구법 27조 수정 보충	
16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 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의 동굴, 폭포, 옛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지 말며 정해진 오염물질의 배출 기준, 소음, 진동 기준 같은 환경보호 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16	16	2002년, 2003년: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 충당방법 및 입장료 징수 허용(입장료 수입 허용) 명시 2011년: 환경관리 조항. 구법 11조 수정 보충	

부록. 계속

2002. 11. 13		2003. 4. 24		2011. 5. 31		특징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17	관광객이 휴대할 수 없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무기, 총탄, 폭발물, 흉기 2. 정해진 확대 배수 또는 규격을 초과하는 렌즈가 달린 쌍안경, 망원경, 사진기, 록화 촬영기 3. 무전기 4. 독약, 마약, 방사성 물질 같은 유해물질 5. 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6. 사회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각종 인쇄물, 그림, 글자판, 특음녹화물 7. 애완용이 아닌 짐승 8. 이밖에 관광과 관련이 없는 물건	17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7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02년, 2003년: 휴대금지 품목 제시 2011년: 통신수단 이용 조항 신설, 신설 조항
18	관광객은 단독으로 또는 짐체적으로 자동차 같은 륨 전기차를 리용하거나 걸어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행사, 문예활동, 사진촬영, 록화촬영이나 투자상담, 무역계약 체결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18	국제관광특구에서의 관광은 외국인이 한 다 공화국공민과 남측 및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 수 있다.	18	국제관광특구에서의 관광은 외국인이 한 다 공화국공민과 남측 및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 수 있다.	2002년, 2003년: 관광지 내에서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 허용 2011년: 관광당사자에 대한 조항. 구법 2조 수정 보충
19	관광객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지한 노정을 따라 관광하여야 한다. 2. 사 회지도와 주민들의 생활풍습을 존중하여야 한다. 3. 민족의 단합과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인쇄물, 그림, 록음, 록화물 같은 것을 류포시키지 말아야 한다. 4. 관광과 관련된 없는 대상을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19	관광은 등산과 유람, 해수욕, 휴양, 체험, 오락, 체육, 치료 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한다. 관광객은 국제관광특구에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	19	관광은 등산과 유람, 해수욕, 휴양, 체험, 오락, 체육, 치료 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한다. 관광객은 국제관광특구에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	2002년, 2003년: 관광객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명시 2011년: 관광형식과 방법. 구법 3, 18조 수정 보충

부록. 계속

조항	2002. 11. 13		2003. 4. 24		2011. 5. 31		특징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내용	
19	5.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정한 출입금지 또는 출입제한 구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6. 통신키제를 관광과 관련 없는 목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7. 혁명사적지와 력사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동식물, 온천 같은 관광자원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0	관광객은 금강산 관광지구 밖의 다른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관광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20	관광객은 금강산 관광지구 밖의 다른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관광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20	국제관광투구위원회는 관광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2002년, 2003년: 관광증명서 발급 후 관광객의 금강산 이외 지역 방문 허용 2011년: 관광투구위원회의 관광환경과 조건 보장 의무 명시. 구법 15조 수정 보충	
21	관광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하여 관광업을 할 수 있다 관광업에는 여행업,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것이 속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같이 공해가 없는 첨단 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 수 있다.	21	관광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하여 관광업을 할 수 있다 관광업에는 여행업,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것이 속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같이 공해가 없는 첨단 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 수 있다.	21	투자가는 국제관광투구에서 숙박, 식당, 상점, 카지노, 골프, 야간구락부, 치료, 오락 같은 여러 가지 관광봉사시설을 꾸리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봉사할 수 있다.	2002년, 2003년: 관광지구에 대한 투자 허용 대상 및 투자분야 명시. 2011년: 투자종목 및 투자가의 활동 분야/종목 명시. 구법 15조 수정 보충	
22	관광지구에는 관광업과 그와 연관된 허부구조 건설부문의 투자를 장려한다. 금강산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22	관광지구에는 관광업과 그와 연관된 허부구조 건설부문의 투자를 장려한다. 금강산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22	국제관광투구에서는 국제회의의 박람회, 전람회, 토론회, 예술공연, 체육경기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할 수 있다.	2002년, 2003년: 관광지구와 관련된 사회기반시설 투자 장려분야로 명시. 단 관광자원이 파괴되는 인프라 건설은 금지(예외)	

부록. 계속

조항	2002. 11. 13		2003. 4. 24		2011. 5. 31		특징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조항	
22							2011년: 관광특구에서 가능한 행사 종류 명시. 행사 및 활동범위 확대. 신설된 조항
23	관광특구에 투자하려는 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기업 창설 승인과 업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 창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기업 등록을 하며 해당 기관의 세관등록, 세무 등록을 하여야 한다.			23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과 국제관광특구 관리위원회는 국제비행장과 항만, 관광철도, 관광도로를 건설하여 관광객들의 교통상 편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2002년, 2003년: 관광지구 투자방법 및 행정절차, 과징 명시 2011년: 관광특구 지도기관 및 위원회의 관광객들에 대한 교통편리 보장에 대한 의무 명시. 신설된 조항. 관광객에 대한 편의 도모 및 관광객 유치 위한 노력 반영 처사. 신설 조항
24	관광지구에서는 정해진 친환경 외화를 쓸 수 있다. 친환경 외화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관광지구에서 외화는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24	투자자는 국제관광특구 개발을 위한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여행업, 숙박업, 식음업, 카지노업, 골프장업, 오락 및 편익시설 같은 관광업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2002년, 2003년: 관광지구 내에서의 친환경 화폐 사용 가능 및 외화 반출입 조항 명시 2011년: 투자자의 투자 가능 범위 및 투자형태 명시. 구법 21조 수정 보충

부록. 계속

2002. 11. 13		2003. 4. 24		2011. 5. 31		특징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25	남측 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관광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거나 다른 관광지로 출입하는 질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통하여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25	국재관광특구의 개발은 개발 총계획에 따라 한다. 국재관광특구에서 하부구조를 건설하거나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는 국재관광 특구개발 총계획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25	국재관광특구의 개발은 개발 총계획에 따라 한다. 국재관광특구에서 하부구조를 건설하거나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는 국재관광 특구개발 총계획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2002년, 2003년: 금강산 관광의 경우 출입증명서를 갖고 지정된 통로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조항 명시 2011년: 특구 개발은 개발 총계획에 따라야한다는 개발지침 명시. 구별 9조~10조 수정 보충
26	관광지구의 출입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관광지구 관리기관 사이에 합의한 통로와 수송수단으로 한다. 관광객의 수송수단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은 때부터 관광을 마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까지 정해진 관광표식기만을 게양한다.	26	국재관광특구에서 기업을 창설, 운영하려는 투자자는 국재관광특구관리위원회 회의 기업 창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 창설 승인을 받은 투자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기업등록과 세무 등록, 세관 등록을 하여야 한다.	26	국재관광특구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하부구조 건설승인은 국재관광특구지도기관이 한다.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2002년, 2003년: 관광통로 및 수송수단에 대한 조항 명시. 관광표식기 게양 의무 명시 2011년: 기업 창설 및 운영 승인과정 명시. 구별 23조 수정 보충.
27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관광객과 기타 인원, 동식물과 수송수단은 출입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출입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사업을 관광지구의 안전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27	국재관광특구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27	국재관광특구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2002년, 2003년: 출입 및 세관 검사 의무 명시 2011년: 하부구조건설 승인기관 명시(국재관광특구지도기관) 및 하부구조 건설에 대한 투자 장려 입장 명시. 구별 22조 수정 보충

부록. 계속

2002. 11. 13		2003. 4. 24		2011. 5. 31		특징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28	이 법을 이거 관광지구의 관리 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손해보상 같은 제재를 줄 수 있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다.		관광사업에 이 법을 이거 관광지구의 관리 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손해보상 같은 제재를 줄 수 있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다.	28	국재관광특구에는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내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재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2년, 2003년: 관광법규 위반조치/차벌 명시 2011년: 지사, 대리점, 출장소의 설립 허용 및 승인요건 명시. 신설 조항.
29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 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기업과 개인은 국재관광특구 안에 설립된 공화국은행 또는 다른 나라는행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리용할 수 있다.	29	기업과 개인은 국재관광특구 안에 설립된 공화국은행 또는 다른 나라는행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리용할 수 있다.	2002년, 2003년: 분쟁발생시 해결방안 제시 2011년: 개인 및 기업의 특구 내 개좌 개설 및 이용 허용 명시. 신설 조항.
			기업과 개인은 국재관광특구 안의 장혜진 장소에서 외화유기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30	기업과 개인은 국재관광특구 안의 장혜진 장소에서 외화유기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외화유기증권 거래 허용 조항. 신설 조항.
			기업과 개인은 국재관광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 수 있다.	31	기업과 개인은 국재관광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 수 있다.	보험가입 허용 조항. 신설조항.
			기업은 현대적인 정화장, 침전지, 오물처리장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 추고 버림물을 관병과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32	기업은 현대적인 정화장, 침전지, 오물처리장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 추고 버림물을 관병과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기업의 환경보호시설 및 위생시설 구비 의무 명시. 오물처리 과정에서 환경보호 의무 명시. 구법 14조 수정 보충.

부록. 계속

2002. 11. 13		2003. 4. 24		2011. 5. 31		특징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33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은 공화국의 로력과 다른 나라 또는 남측 및 해외동포투력을 채용할 수 있다.	노동력 채용 허용범위 명시. 신규조항
				34	관광특구에서 튜통화페는 전환성 외화로 한 다 전환성 외화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국제 관광특구지도기관이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유통화폐 명시. 구법 24조 수정보충.
				35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 입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리운과 소 득금을 송금할 수 있다 투자가는 다른 나라 에서 국제관광특구에 들어왔던 재산과 국제 관광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경 영기간이 끝나면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외화반출입 및 송금, 재산반출 허용 명시. 신설조항.
				36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해당 범규 에 정해진 세금을 물어야 한다.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건설 같은 특별 장려부문 기업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준다.	세금납부의무 및 특별 장려부문기업 에 대한 면제, 감면 조치 명시. 구법 8조 수정 보충

부록. 계속

2002. 11. 13		2003. 4. 24		2011. 5. 31		특징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37	국채관광투구에서는 정해진 금지품을 제외하고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자유롭게 들여오거나 내갈 수 있다.	금지품목을 제외한 경영활동과 연계된 물자의 자유로운 반출입 허용 명시. 신규 조항
				38	국채관광투구에서는 특별관제체도를 실시한다. 국채관광투구의 개발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자,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해진 규모의 사무용품, 생활용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세면제대상의 물자를 국채관광투구 밖에 팔거나 국기에서 제한하는 물자를 국채관광투구 안에 들여오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부과 및 면세 대상 명시. 신규 조항
				39	국채관광투구관리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국채관광투구의 개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정된 비행장을 통하여 국채관광투구로 출입할 경우에는 비행장 통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투구관리위원회와 해당 기관의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 및 반출입 환경 보장의무 명시. 비행장 통과세 면제 조항 명시. 신규 조항

부록. 계속

2002. 11. 13		2003. 4. 24		2011. 5. 31		특징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40	이 법을 이거 국제관광특구의 관리 운영 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기업, 개인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는 장상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공화국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관광특구 관리 운영 및 관광사업에 지장을 준 대상에 대한 손해보상, 벌금부와 조항 명시. 안전침해 또는 사회질서 위반 시 처벌 및 제재 명시. 구법 28조 수정 보충
				41	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운영,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절차로 해결하거나 공화국의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제시. 구법 29조 수정 보충

주: 이탤릭체로 표기된 부분이 중요 변화내용 또는 신규조항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 관광지구법 20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 관광지구법 20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2011.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 Tourism and Policy Implication

Jiyeon Kim, Pilsoo Choi, Minkyung Lim, and Seung Kwon Na

China is the most significant partner to North Korea in economic cooperation of tourism. In 2012, 4,500 North Koreans traveled China, while at least 50,000 Chinese traveled North Korea. It is between April and November that Chinese tourists visit North Korea. During winter, North Korea close its door to foreign tourists due to a electronic power shortage, ice formation, problem in heating supply, and other limitation in environmental factors.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tour programs in North Korea, in terms of border city tour and Pyongyang and other city tour. The first one focuses on traveling border cities between the North and China, while tour programs in the second one concentrate on traveling Pyongyang and its nearby cities. Vehicle, train, or walking on foot is main transportation in the border program, while airplane, cruise, train, and vehicle are main transportation for the interior city tour. Average cost for the border program is approximately 700~2,500RMB per person, and it is 1,700~6,500 RMB per person for the Pyongyang and

nearby city program. Yanji, Hunchun, Tumen, Shenyang, Dandong, and Peking are gate cities for traveling North Korea. Travelers from Yanji, Shenyang, and Peking are available for airplane, train, and vehicles, while those departing from Hunchun, Tumen, and Dandong take only train or vehicles.

There are 1,864 international travel agencies in China, and among them only selected number of agencies which make contract with national travel agencies in North Korea, in terms of Chosun International Travel Agency, Chosun International Youth Travel Agency, and Chosun International Physical Education Travel Agency obtain authority to send Chinese trip to North Korea. There are approximately 15 authorized agencies in Yanji, Hunchun, and Tumen. In Shenyang and Dandong, it is about 10 agencies, and there are approximately 10 agencies in Peking.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50,000~60,000 Chinese traveled North Korea in 2012. It also estimated that North Korea earned approximately 21.7million ~34.6million US dollar through Chinese travelers in 2012. When the fact that North Korea earned 86million US dollar through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2012 is considered, economic cooperation size in tourism between the North Korea and China is not small enough to be ignorant.

Based on the paper results, fundamentally growth potential in tourism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not high, because of limited chinese tourist demand to North Korea, poor infrastructure and system, and low rate of return in North Korea tour goods.

But, it could be positive factor that chinese demand for overseas travel is growing fast. And it is hard to estimate trend of china's tourism demand to North Korea, because china travel agency started to deal with travel good in North Korea, recently.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13년

13-01 APEC 환경상품 논의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중심으로 / 임경수 · 박혜리

13-02 중국 토지공급체계의 변화와 개혁과제 / 최필수 · 조성찬

13-03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 임민경 · 여지나

13-04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 이종운 · 홍이경

13-05 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13-06 상하이 시 문화산업 현황과 시사점 / 노수연 · 곽주영

13-07 한·캐나다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 고희재 · 김종혁

13-08 중국 농촌 소비시장 특징과 진출방안: 베이징 시 근교를 중심으로 / 김부용 · 오종혁

13-09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활용방안 / 정여천 · 박순찬 · 강부균

13-10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 김홍중 · 정성춘 · 김태운 ·곽성일 ·이형근 ·이현진

13-11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 김지연 · 최필수 · 임민경 · 나승권

13-12 한·중·일 3국 IT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검토: 생산성 분석을 중심으로 / 나승권 · 방호경 · 이보람

13-13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 김종덕 · 엄준현

- 2012년

12-01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 배찬권 · 금혜운 · 김진오

12-02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쿱을 중심으로 / 강대창

- 12-03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전략 연구 / 여지나 · 박민숙
- 12-04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amid a New East Asian Integration with an Emphasis on FDI Flows / Choong Yong Ahn and Sung Chun Jung
- 12-05 Issues on Development Aid: European Perspective / Deok Ryong Yoon *et al.*
- 12-06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 정지현
- 12-07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환북해지역을 중심으로 / 김부용 · 이상훈 · 임민경
- 12-08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이상훈 · 김부용 · 박진희 · 여지나 · 이상희 · 임민경
- 12-09 중국 상하이(上海) 시 고급소비재 시장 진출기업 경쟁전략 분석 및 시사점 / 노수연 · 何喜有

■ 2011년

- 11-01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11-02 장쑤성(江蘇省)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시사점 / 노수연
- 11-03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 김정곤 · 김균태
- 11-04 징진지(京津冀) 지역 LED 산업 현황과 시사점 / 김부용
ODA 정책연구 11-01
- 11-05 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 손기태 · 김민희 · 박수경
ODA 정책연구 11-02
- 11-06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 권 율 · 박수경 · 이주영
ODA 정책연구 11-03
- 11-07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 정지원 · 정지선
ODA 정책연구 11-04
- 11-08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 정지원 · 박수경 · 임소영
ODA 정책연구 11-05
- 11-09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 정지선 · 이주영

- ODA 기초연구 11-01
- 11-10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
김종일 · 김낙년 · 황원규 · 윤미경
- ODA 기초연구 11-02
- 11-11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 강인수 · 송유철 · 유진수
- 11-12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
정형곤 · 방호경
- ODA 기초연구 11-03
- 11-13 주요국 무역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
한홍렬 · 이호생 · 이시욱
- ODA 기초연구 11-04
- 11-14 ODA 분야에서의 민간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 노한균
- ODA 기초연구 11-05
- 11-15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 김철희
- 11-1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과 시사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
- 11-17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
이창재 · 정재완 · 방호경
- 11-18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장쑤성 진출사례와 시사점 /
노수연 ·곽주영
- 11-19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김정곤 · 금혜윤
- 11-20 북한의 대외경제 10년평가(2001~10년) /
홍익표 · 이종운 · 김지연 · 양문수 · 이찬우 · 임수호 · 방호경
- 11-21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 고희채 · 이보람 · 오민아
- 11-22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 박월라 · 최의현
- 11-23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
김부용 · 오종혁
- 11-24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
정지현 · 이혁구
- 11-25 중국 산둥성 투자환경 분석: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를
중심으로 / 이상훈

- 11-26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가능성 연구 / 정지현
전략지역심층연구 11-01
- 11-27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 김찬완·임정성·손승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1-02
- 11-28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 방안 / 이순철·이영일
전략지역심층연구 11-03
- 11-29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
조충제·은기수·박 건·장원봉·유성용·정혜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4
- 11-30 한·인도 그린에너지 산업 협력방안 / 김현제·조상민·박찬국
전략지역심층연구 11-05
- 11-31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
이 용·최호상·정무섭·서대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6
- 11-32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
강대창·박나리·유현석·김형중·이동윤
전략지역심층연구 11-07
- 11-33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
조홍국·윤진표·이한우·최경희·김동엽
전략지역심층연구 11-08
- 11-34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신민규·김홍구·조영희·이요한
전략지역심층연구 11-09
- 11-35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강대창·박나리·김형준·홍석준·원순구·손승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1-10
- 11-36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
이호생·강인수·송유철·한홍렬
전략지역심층연구 11-11
- 11-37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
오윤아·강대창·김유미·박나리·장준영·최재현·우꼬레
전략지역심층연구 11-12
- 11-38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 이재영·김석환·정세진·박정호·박병인·나희승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3
- 11-39 **한·중양아시아 인적지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윤성학 · 김안국 · 김영진 · 김일겸 · 성동기 · 홍미희 · 이시영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4
- 11-40 **중양아시아 외국인 투자의 특징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조영관 · 주진홍 · 강명구 · 김영식 · 오영일 · 이상준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5
- 11-41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 방안 /**
이재영 · 이시영 · 이평래 · 윤익중 · Avirmed S.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6
- 11-42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7
- 11-4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동남아시아 1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8
- 11-4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동남아시아 2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9
- 11-4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양아시아 1
- 전략지역심층연구 11-20
- 11-4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
중양아시아 2
- 전략지역심층연구 11-21
- 11-4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I**
몽골, 터키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8
- 11-48 **브라질의 파워외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 김원호**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9
- 11-49 **중남미의 기술지도와 한-중남미 기술협력전략 / 김종섭 · 박민경**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0
- 11-50 **중동 민주화의 대내외 정치역학 / 서정민 · 인남식**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1
- 11-51 **중동지역 한국학 관련 고문헌 및 역사 어문자료 기초 조사 / 이희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3
11-52 한·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 실태 및 적극적 활용 방안 연구 / 허재준·염지환·김봉훈·이건준·김상식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4
11-53 과테말라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의 수거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정우현·추장민·한동훈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5
11-54 중동·북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알제리·튀니지·리비아를 중심으로 / 홍현표·장홍석·안재현·한덕훈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6
11-55 아시아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중심개발(TOD) 효과분석 및 종합편익 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 방콕, 마닐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 박지형·성현곤·황보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7
11-56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 방안 연구 / 오삼교·이남섭·최윤국·홍옥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8
11-57 한국 체류 중남미인 실태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김창민·주종택·최진숙·강정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9
11-58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 정경원·조희문·문남권·유동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0
11-59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 박윤주·임상래·이상현·조영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1
11-60 브라질의 중앙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 / 김영철·임두빈·김우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2
11-61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 조성권·주미영·박상현·하상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3
11-62 최근 MENA 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 문정인·이광열·고아름·김현규·김진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4
11-63 한국과 중동·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 조홍식·신동찬·이유봉·황형준·조정익·정대원·강형석·김 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5
11-64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 방안** / 이충열·이영수·제상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6
11-65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 집단 간 갈등 양상에 관한 기초 연구: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 김정숙·김양주·임기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7
11-66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
황병하·김강석·김선하·김화선·최지원

저자 약력

김지연(金知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asters' Sciences at Social Work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Master's at Publ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y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공저, 2009)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공저, 2011) 외

최필수(崔弼洙)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중국 칭화대학교 경영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pschoi@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공저, 2013)
『중국 토지공급체계의 변화와 개혁과제』(공저, 2013) 외

임민경(林珉璟)

성신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現, E-mail: mkl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공저, 2012)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공저, 2013) 외

나승권(羅承權)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skna@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중·일 경제협의회 구상』(공저, 2012)

『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권을 중심으로』(공저, 2013)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References 13-11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 Tourism and Policy Implication

Jiyeon Kim, Pilsoo Choi, Minkyung Lim, and Seung Kwon Na

본 연구는 북·중 관광협력의 실태와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양국 관광협력의 추진배경, 관련법률 및 행정기구 현황, 최근 관광협력의 현황 및 이에 따른 외화수입 추정규모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대(對)북 관광수요는 중국 내 북한 관광에 대한 제한적 수요 여건, 북한 여행 인프라 및 제도의 미흡, 북한 여행상품의 낮은 마진율 등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으로 그 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 내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 내에서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23551
ISBN 978-89-322-2355-1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